

Ⅰ 보육교직원 인권교육 교재

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영유아 인권 길라잡이(2015)

초판인쇄 | 2015. 12. 10.

초판발행 | 2015. 12. 10.

지은이 | 윤재희, 이효정, 김성숙, 김영희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5

F A X | 02)2125-0917

E-mail | hjkim510@nhrc.go.kr

표지 디자인 | 달고은네 02-2278-1690

본문 디자인 | 케이엘퍼니쉬 070-8654-4215

인쇄 | 금성문화사 02-2266-0571

이 교재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간/사

책을 펴내며

우리나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77%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2%의 영유아는 신생아 시기부터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아동 보육에 대한 가족 기능이 약해짐에 따라 현재 보육은 국가 및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무상보육’, ‘보육의 사회화’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시간에 어린이집을 양적으로 확대한 결과, 어린이집 제도는 영유아, 양육자 및 교직원 등 중요한 주체들의 인권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표출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영유아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015년 전후로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 인권 관점에서 어린이집이 얼마나 열악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기본권 가운데 참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보호권조차도 위협받는 현실에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 인권 보장 수준은 매우 우려되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력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 CCTV 설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서의 ‘인성(인권을 포함) 교육’을 의무화한 내용들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인권교육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 점은 큰 의미가 있으나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개정 이전부터 인권교육교재 개발을 착수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영유아분야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대상 인권교육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 인권교육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가진 고유의 인권을 인식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이 교직원의 책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영유아의 인권증진을 위해 보육교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을 이해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현장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둘째, 영유아의 인권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교직원 개인의 인권 의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문제의식을 통하여 사고하는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현장의 예가 ‘교사 대 아동비율’인데 교



사 한 사람에게 배정된 아동의 수가 많으면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동 인권의 증진 수준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 수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관계 기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인권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재는 영유아 인권 증진 관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이해와 실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단지 선언적인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 국가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규정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육 현장에서도 영유아 인권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인권을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현장에서 인권을 실현하려고 하면, 인권은 새로운 것 또는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육 실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적용 가능한 일과 중심의 보육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육현장에서는 일부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체 보육교직원들의 명예와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게 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보육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직원 스스로 영유아 인권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이 교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교재 발간을 위하여 연구부터 집필까지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윤재희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문과 인터뷰에 응하여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교재의 목적 및 목표	i
교재의 내용	iii
교재의 구성원리와 구성	vi
교재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	ix

Chapter 01 인권에 다가가기

1. 인권의 정의	4
2. 인권의 역사와 발전	5
3. 인권의 분류와 내용	11
4. 인권의 특성과 원칙	15
5. 한국사회와 인권	19

Chapter 02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38
2. 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41
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	45

Chapter 03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1. 권리주체로서의 영유아	54
2. 영유아 인권과 보육 그리고 보육교직원	58
3.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탐색하기	66



Chapter 04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1. 딜레마 상황	83
2. 보육 일과 속 영유아의 인권	86

Chapter 05 인권옹호자로 나아가기

1. 인권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기	124
2. 인권친화적 교수자 되기	127
3. 상호존중과 돌봄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력하기	129
4. 가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131

부록

1. 세계인권선언	138
2. 아동권리협약	143
3. 유엔 사회권위원회 2009년 권고 사항의 세부 내용	150
4. 영유아보육의 인물로 살펴본 아동권리 존중의 전통	155

참고문헌	165
------------	-----

〈표 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의 내용	iii
〈표 2〉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	ix
〈표 3〉 교재의 각 장별 활동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의 예	x
〈표 1-1〉 국제인권조약 현황	9
〈표 1-2〉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12
〈표 1-3〉 인권의 이론적 분류표	14
〈표 1-4〉 국제인권조약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22
〈표 2-1〉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42
〈표 2-2〉 아동권리협약 1부의 주요 내용	43
〈표 2-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46
〈표 2-4〉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영역	47
[그림 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ii
[그림 2]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장별 구성	viii

교재의 목적 및 목표

이 교재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 역량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어린이집이 영유아 인권이 실현되는 현장이 되려면, 교사가 영유아가 보유한 모든 권리를 이해하고, 보육 일상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이 교재는 첫째, 보육교직원이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을 이해하고, 둘째,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셋째,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고, 넷째,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교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이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진 권리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영유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를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보유자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러 자질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의 의무이행자 역할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부모만큼이나 영유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영유아가 보유한 모든 권리가 어린이집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스스로 인권의 관점에서 자신의 직무를 살피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소극적인 영유아 보호에서 적극적인 영유아 인권실현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은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일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더욱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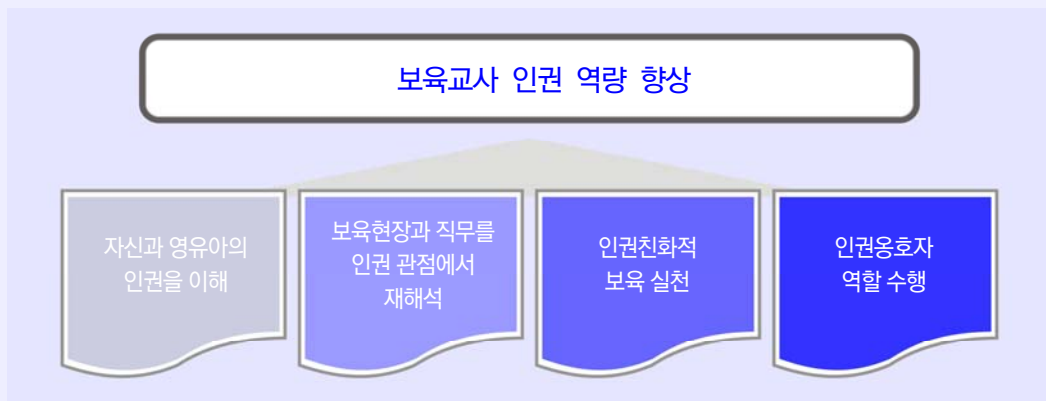
셋째, 보육교직원이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할 수 있다.

다양한 발달적 요구와 흥미를 가진 영유아들로 구성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은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효과적으로 통합·조직하여 인권친화적 보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보육교직원이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요인과 인권친화적 교수법을 탐색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시된 딜레마 상황은 이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추출된 것이다. 친숙한 일상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은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인권친화적 보육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육교직원이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인권옹호자로서 보육현장에서 인권의 가치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권리 영역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어린이집을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실천할 방안을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한다.

교재의 목적 및 목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교재의 내용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이 교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연구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의 내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제 1장	인권에 다가가기	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와 발전	-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 유엔과 인권의 발전 - 유엔과 비정부기구
		인권의 분류와 내용	- 국제인권장전에서의 인권 분류 -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인권 분류 - 인권의 이론적 분류
		인권의 특성과 원칙	- 보편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불가분성 - 도덕성, 우월성, 근본성, 추상성 -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 - 소수자 보호 - 권리 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
		한국사회와 인권	- 한국사회와 인권의 발전 -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제 2장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	-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제 3장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권리주체로서의 영유아	- 영유아와 영유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 권리주체인 영유아의 취약성 - 영유아와 관련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의 의미
		영유아 인권과 보육 그리고 보육교직원	- 영유아 보육과 인권 - 의무이행자로서의 보육교직원 -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 -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자질 -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현장의 구조적 지원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탐색하기	
제 4장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딜레마 상황	
		보육 일과 속 영유아의 인권	- 등원: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요. - 자유놀이시간: 내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 자유선택활동: 다른 놀이하고 싶어요! - 대집단 활동: 이 활동 안 하고 싶어요. - 정리정돈: 더 놀고 싶어요! - 점심: 안 먹고 싶어요.
제 5장	인권옹호자로 나아가기	인권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기	
		인권친화적 교수자 되기	
		상호존중과 돌봄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력하기	
		가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이 교재는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재인용; Levin, 2012).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의 인권교육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인권의 역사, 인권 관련 주요 국제문서, 인권실현의 기제 등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기본적 권리 및 권리침해를 이해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권을 위한 교육은 가치와 태도에 관한 인권교육이다. 인권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인권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헌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점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인권감수성 함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교육이 교육자와 학습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이 교재는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와 발전과정,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특성과 원칙, 한국사회와 인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기본적 권리와 권리침해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협약의 기본원칙 및 4대 권리 영역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이 교재는 자신의 일상에 내재한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영유아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에서 다루어지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기초연구의 결과를 통해 구체화된 딜레마 상황과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보육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인 보육교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교재는 유엔과 여러 인권교육 관련 문헌에서 언급한 것처럼 게임, 역할극, 미술적 표현방식, 글쓰기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교재의 구성원리와 구성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식, 즉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교재는 제1차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인권교육 관련 문헌과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교재의 구성원리와 교수법의 토대가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교육의 교재는 인권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가치와 태도 형성을 고르게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 관련 문헌은 인지적인 측면의 인권에 대한 교육과 가치와 태도 형성을 위한 인권을 위한 교육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를 탐색한 문헌들도 지식과 가치와 태도 형성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와 면담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정보전달 중심의 인권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지식, 기술, 태도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인권교육을 지지한다.

둘째, 인권교육의 교재는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 선행 문헌은 학습자가 인권을 자신의 생활 경험 기반 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가 추상적인 개념과 가치를 자신의 생활과 경험에 적용함으로써 인권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면서 인권친화적 보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인권교육의 교재는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러 선행 문헌은 인권교육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소규모 교육은 대규모 교육보다 학습자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효율적이다. 설문조사와 면담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 역시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인권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원리를 적용하였다.

첫째, 보육교직원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습득해야 할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을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고려한다.

둘째, 이 교재의 각 장은 보육교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인권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들어가며 → 사전 활동 → 본 활동 → 사후 활동의 순으로 구성하여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진행 시간과 방법 등은 참여자의 특성과 진행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경험이 주요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즉 현상성 있는 생생한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육교직원이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이를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딜레마 상황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상황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비판적 성찰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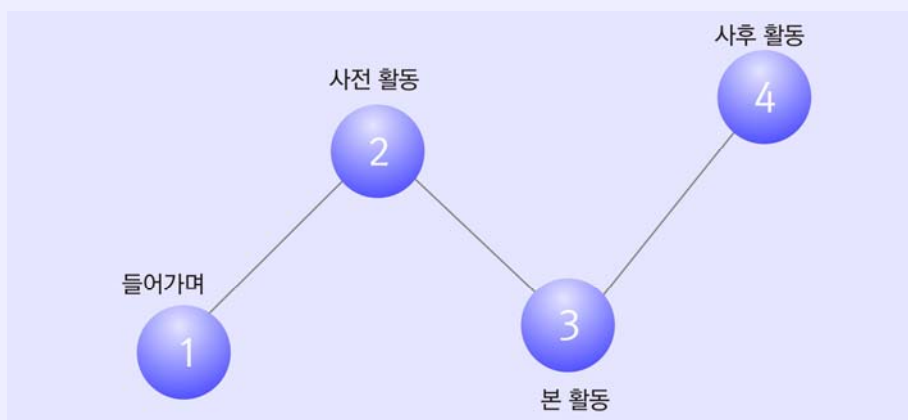
다섯째, 보육교직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이에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현장에서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 참여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일곱째, 보육교직원 자신의 인권 경험 살펴보기, 성찰적 사고, 경험 나누기 등을 위해 소집단 토의를 먼저 적용한 후,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방법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여덟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의, 브레인스토밍, 사례연구, 소집단 토의, 역할극, 창의적 표현, 게임,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한다.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해 5개의 주제 1) 인권에 다가가기 2)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3)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4)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5) 인권 옹호자로 나아가기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장을 가능한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교재 각 장의 구성을 간략히 설명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장별 구성

교재의 각 장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구성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들어가며’는 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짧은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둘째, ‘사전 활동’은 본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본 활동’은 각 장에서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나 소집단 토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사후 활동’은 ‘본 활동’에서 습득한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성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교재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인권 경험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스스로 인권친화적 보육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교재에서 주로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강의, 브레인스토밍, 사례연구, 소집단 토의, 역할극, 창의적 표현, 게임, 시청각 자료 등이며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

기법	내용
강의	인권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식 방법
브레인스토밍	인권 관련 제시어에 대해 반응하고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합하고 수정하고 삭제해 나가는 방법
사례연구	주어진 사례에 대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인권의 관점으로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
소집단 토의	2~6인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
역할극	인권 관련 상황을 짧은 이야기나 상황극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창의적 표현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이야기, 시, 그래픽 미술, 조각, 연극, 노래, 무용 등으로 표현하는 방법
게임	인권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인권을 알아가는 방법
시청각 자료	철판, 포스터, 전시물, 차트,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등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권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한편 본 교육 프로그램의 각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활동별로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교재의 각 장별 활동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의 예

구분	제목	활동명	교수-학습 방법
제 1장	인권에 다가가기	인권은 ○○○이다.	브레인스토밍
		내 인생의 인권 사건	소집단 토의
		숨어있는 인권을 찾아라!	게임
제 2장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내가 가졌던 권리, 내가 지켜준 권리	소집단 토의
		빼빼롱스타킹	역할극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	소집단 토의
제 3장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다시 살펴본 영유아보육의 주요 인물	사례연구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진단표	소집단 토의
		인권으로 다시 쓰기	창의적 표현
제 4장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나의 하루	소집단 토의
		인권으로 다시 보는 나의 하루	소집단 토의
제 5장	인권옹호자로 나아가기	인권친화적 보육교사	소집단 토의
		내 동료들 소개합니다	사례연구
		인권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	창의적 표현



Chapter 1



인권에 다가가기¹⁾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역사와 발전
3. 인권의 분류와 내용
4. 인권의 특성과 원칙
5. 한국사회와 인권



인권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흔히들 인권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당연한 권리가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인권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인권에 다가가기로 시작합니다.



1) 이 글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행정과 인권 : 이성훈, 김중섭, 박홍규, 김형식, 이용교, 김선옥, 김기수, 한면희, 이인호>을 참조하여 2014년 개정한 연구결과물로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김지혜(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이승택(상명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박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가 작성한 글을 일부 정리하였다.

사전
활동

인권은 ○○○이다!

- 1) 인권하면 떠오르는 단어 10개를 빈 칸에 적어 보세요.
- 2) 10개의 단어 중에서 인권과 더욱 가깝다고 생각하는 단어 5개를 빈 칸에 적어 보세요.
- 3) 5개의 단어 중에서 인권과 더 가까운 단어 3개를 빈 칸에 적어 보세요.
- 4) 마지막으로 단어 3개 중 인권은 ○○○에 들어갈 단어 1개는 무엇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인권의 정의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줄인 것으로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에 기초하여,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침해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라는 두 개의 철학적·정치적인 개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학자들은 이러한 인권을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에서 ‘천부(天賦) 인권’ 또는 ‘생득권’(birthright), 그리고 ‘정의로운 법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뜻에서 ‘자연권’이라고 부른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개념 정의를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의 최종적 근거인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오늘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식 또는 일상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인권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지거나 준수해야 할 법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아직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인권 없이 또는 인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이미 1948년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건설되는 단계에서부터 헌법에 수용되어 법적 보호를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2. 인권의 역사와 발전

1)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인권의 개념은 역사의 소산이고 문명의 산물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념은 특정한 시대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였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현재 보편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만들어질 당시 세계 역사를 주도하던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의 정치문화가 더 많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 인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지역에서 인권의 관념과 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근대 서구에서의 인권의 발전

서구에서 근대적인 인권보장은 국민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하는 제도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었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 1628년 권리청원(The Petition of Rights), 그리고 1679년 인신보호령(Habeas Corpus Act)을 거쳐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귀결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과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법치주의 원칙이 수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근대 입헌국가의 헌법에 인권이 기본권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전개된 권리의 문서화는 왕권에 대한 귀족 특권층의 권리보장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봉건사회가 붕괴하면서 권리 쟁취의 주도권이 서서히 귀족에게서 의회로 넘어갔고 이를 계기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에 큰 영향을 미쳤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정치사상이 탄생하였고 인권사상은 이를 통해 널리 퍼졌다. 대표적인 예로 루소는 〈사회계약론〉(1762)을 통하여 인민주권의 원칙을,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하여 권력분립 제도를, 로크는 〈시민정부론〉(1690)에서 정부의 목적이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설파하였다. 휴머니즘과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는 이들의 사상을 기초로 절대왕권을 대체하는 자유민주





주의의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고 국민주권의 상징으로 각 나라마다 만든 헌법에 기본권이란 형태로 인권이 목록화되기 시작하였다.

유럽 대륙에서의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는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영향을 끼쳐 1776년 <미국독립선언>이 발표되었고 프랑스에서는 혁명 기간 중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선포되었다. 이 두 개의 역사적 선언을 계기로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인권보장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고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이를 보통 근대 시민혁명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봉건제 말기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당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던 시민계급인 자본가 계층이 인권운동을 주도하였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은 흑인 노예 해방, 여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전쟁 기간 중의 인권보호, 즉 인도주의법의 발전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양적으로 급격히 증대하였고 아동노동,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당시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주장했던 사회주의 사상은 인권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2)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인권

20세기에 들어와 인류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참화를 겪었다. 독가스, 탱크, 세균전 등 근대의 과학기술 남용으로 군인과 민간인의 대량살상이라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어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시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였다. 유럽에서는 나치에 의해 유대인과 소수민족이 대규모로 학살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남경대학살, 종군위안부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반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 특히 서구사회는 전쟁과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 해에는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제연맹의 규약에는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고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계획도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여하는 것은 내정간섭, 즉 주권침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주권의 절대성 주장은 약화되고 대신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당시 정치지도자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자각하였고 인권의 존중과 보장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1945년 창설된 유엔(United Nations) 현장에는 인권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고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유엔과 인권의 발전

오늘날 유엔은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중심적인 국제기구로 자리 잡았다. 유엔은 현장 전문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고 현장 제1조에서 유엔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정신에 따라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을 시작으로 각종 인권기준의 제정과 인권보장제도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1) 국제인권장전

국제인권장전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양대 규약, 그리고 자유권 규약의 개인청원 및 사형폐지에 관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개의 문서를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문서들이 현재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과 인권보장제도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현장에 언급된 인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당시 국제적 인권운동의 성과를 집대성한 이정표의 성격을





지닌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을 역사상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명칭 자체가 말해주듯 강제 집행력을 가진 국제법적 문서가 아니라 도덕적 구속력을 지닌 선언문이다. 그러나 1948년 이후 독립하여 헌법을 제정한 많은 국가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자국의 헌법에 인용하거나 반영하였다. 그리고 유엔의 여러 전문기구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구성된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f Human Rights)가 30개월의 작업 끝에 합의한 것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것이다.²⁾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망라하고 있는데 선언의 내용은 나중에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양대 규약에 의해 법적 권리의 형태로 세분화되었다.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모태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인권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국제 인권기준은 원칙(principle), 선언(declaration), 헌장(charter), 그리고 협약(conven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³⁾ 일반적으로 원칙이나 선언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 만들어진다.

인권협약의 경우 1966년에 채택된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 말고도 1966년에 인종차별철폐협약,⁴⁾ 1979년에 여성차별협약,⁵⁾ 1984년에 고문방지협약,⁶⁾ 1989년 아

2) 세계인권선언의 협상 및 채택 과정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1995, 오름 출판사 참조.

3) 인권에 관한 조약(Treaty) 가운데 사회권과 자유권은 ‘규약(Covenant)’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협약(Convention)’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4)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다.

5)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고,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동권리협약,⁷⁾ 1990년에 이주노동자협약,⁸⁾ 2006년에 장애인권리협약⁹⁾ 및 강제실종자협약¹⁰⁾ 등이 만들어졌다. 인권협약을 제정하는 작업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표 1-1〉 국제인권조약 현황¹¹⁾

조약 공식명칭 (약칭·영문 및 한글)	채택/ 발효연도	당사국 수 (2014.10.현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사회권 규약)	1966년/ 1976년	16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자유권 규약)	1966년/ 1976년	16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1969년	17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1981년	18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고문방지협약)	1984년/ 1987년	15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아동권리협약)	1989년/ 1990년	194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MWC,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년/ 2003년	47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2008년	151
강제실종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ICPPED, 강제실종자협약)	2006년/ 2010년	43

- 6) 고문방지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고, 1987년 6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7) 아동권리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고, 1990년 9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8) 이주노동자협약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이고, 200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9) 장애인권리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고, 2008년 5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10) 강제실종자협약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이고, 2010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 11) 인권조약의 영어 원문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http://www.unhchr.ch/html/intlinst.htm>)에서, 한글 번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http://www.unesco.or.kr/hrtreaty>)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자유권규약처럼 두 개의 선택의정서를 지니고 있는데 아동의 무력 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 중이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도 하나의 선택의정서를 가지고 있다.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과 제도의 정비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의 정치적 의지의 결핍이 지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곤 한다. 즉 적지 않은 수의 국가가 인권의 국제적 보호의 시급성보다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비준 또는 가입을 늦추곤 한다.

3) 유엔과 비정부기구

유엔은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로 구성된 정부 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유엔은 유엔 헌장 제71조를 통해 처음부터 비정부(민간) 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왔다.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때 정부는 국익을 먼저 고려하는 데 반해 비정부기구는 인권의 가치와 피해자를 대변한다. 비정부기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부가 국제 인권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는가를 감시(monitor)하고 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인권침해국으로 비판받는 정부는 비정부기구와 종종 긴장 및 갈등관계에 처하게 되며 인권에 더욱 우호적인 국가의 정부는 비정부기구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인권문제를 다룬다.

유엔에서 인권 분야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크게 국제적 인권 규범의 설정,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확산 그리고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실행 등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정부기구는 새로운 국제적 인권 규범을 설정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한다. 모든 인권 관련 선언이나 조약은 정부 간 기구인 유엔이 채택하고 공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언과 조약의 제정은 피해자를 대변한 비정부기구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정부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내용의 구성에서도 비정부기구는 국익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비정부기구는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수립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정부

기구는 다양한 인권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정부가 국제인권조약을 비준 및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처럼 국제적 인권 규범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절차의 수립을 위한 옹호 활동(advocacy)과 교섭(lobby)을 한다. 이를 통해 주권의 제약과 국익을 구실로 소극적 입장에 있는 정부를 설득하고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비정부기구는 국제적 인권보장제도의 실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감시와 옹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는 정부가 국제적 인권 규범이 부과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교섭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행하고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를 유엔의 관련 기구에 제기하고 유엔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활용하기도 한다.

3. 인권의 분류와 내용

1) 국제인권장전에서의 인권 분류

오늘날 대다수 사회가 인권의 가치와 규범적 보편성을 수용하고 있지만 ‘무엇이 인권이고 무엇이 인권이 아닌가’ 즉 ‘어디까지가 인권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유엔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인권에 관한 규범과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68년 채택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¹²⁾(이하 사회권 규약)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¹³⁾(이하 자유권 규약)은 인권을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1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의 번역어이다. 이 글에서는 줄여서 ‘사회권 규약’으로 표기한다.

13)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번역어이다. 이 글에서는 줄여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표기한다.

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적 권리에는 일할 권리를 의미하는 노동권이, 사회적 권리는 가족권과 건강권이, 문화적 권리는 교육권이 대표적이며 시민적 권리로는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권리로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참정권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분류	개별 인권의 내용
경제적 권리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회권 11조 2항),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2. 노동권 (사회권 6조)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권 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권 9조) 2. 가족, 임신부, 아동의 권리 (사회권 10조),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3. 육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시민적 권리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 26조) 2. 재산자의 권리 생명권 (자유권 6조), 고문금지(자유권 7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자유권 10조) 3.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 금지 (자유권 11조) 4.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 12조) 5.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권 17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유권 19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 (자유권 20조)
정치적 권리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자유권 21조) 2. 결사의 자유 (자유권 22조) 3. 정치에 참여할 권리 (자유권 25조)

이상에서 나열한 인권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모두가 위에서 언급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국가는 그러한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오늘날 대다수 국

가는 유엔이 설정한 이러한 인권의 기준과 조건을 헌법에 기본권의 형태로 수용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 선언문 제5조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천명하였고,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인권 분류

헌법은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주거·사생활·통신의 비밀, 거주·이전·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은 자유권에 속하고,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은 평등권에 속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주거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모성권, 보전권 등은 사회권에 속한다. 이처럼 헌법에 열거된 권리들은 대부분 ‘개별적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뿐만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7조 제1항). 예컨대 생명권, 명예권, 신체의 불훼손권과 같은 기본권은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속한다. 이러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열거된 기본권과 같은 수준에서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도 있지만, 일반적 자유권으로 이해되는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도 있다.

3) 인권의 이론적 분류

위에서 언급한 권리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시민적 권리 혹은 자유권은 국가의 방해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는 ‘소극적 권리’인 반면에 정치적 권리는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이고, 사회적 권리 혹은 사회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자유권이나 정치적 권리의 영역에서 국가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권의 직접적 침해자가 되지만 사회권 영역에서 국가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의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는 전자를 부작위(不作爲)의 의무, 후자를 작위(作爲)의 의무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⁴⁾

한편 자유권과 사회권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자유권은 보통 ‘제1세대 인권’이라고 부르는데 시기적으로 서방의 자유주의적 국가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먼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역사적으로 나중에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에 의해 발전되어온 사회권을 ‘제2세대 인권’이라고 부른다. 1세대 인권이 개인의 자유를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면 2세대 인권은 사회적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주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등을 ‘제3세대 인권’이라 부른다. 제3세대 인권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연대의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는 민족자결권,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주권 이론 등과 관련이 있는데 동서 냉전 시기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표 1-3〉 인권의 이론적 분류표

구분	분류	내용	특성	강조 시대
1세대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 소극적 (negative) 권리, 서방 자본주의 국가	18세기
2세대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권)	노동권, 사회보장, 교육, 의식주 등.	평등, 적극적 (positive) 권리, 사회주의 국가	19세기
3세대 권리	연대의 권리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박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제3세계 국가	20세기

14) 인권을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고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이나 적극적 혹은 작위나 부작위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80년대 이후 많은 인권학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현실에서는 두 권리 범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그러한 국가의 의무 구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서도 경제·사회적 권리가 침해되고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부작위가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적극적 행위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의무에 의한 접근법(State-Obligation based Approach)이 최근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4. 인권의 특성과 원칙

1) 보편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불가분성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이 반세기 넘게 국제사회에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원칙은 ‘보편성’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다.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가치가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구현되지만, 인권의 가치와 기준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권의 정의에서 ‘누구나 마땅히’ 또는 ‘모든 인간은’이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의 보편성은 국적, 인종, 성, 종교, 신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실천적인 함의를 지닌다.

인권의 특성으로 보편성 외에도 상호의존성과 상호불가분성을 들 수 있다.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비엔나선언 제1부 제5항)라고 천명하였고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다’(제1부 제8항)라고 규정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All Human Rights for All)이란 표현은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의 원칙을 동시에 담고 있다. ‘보편성’이란 인권은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 ‘상호불가분성’은 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과 사회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상호의존성’ 또는 ‘상호연관성’이란 현실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쪽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졌는지 모른다. 따라서 자신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는 사회권이 부정될 때 자유권이 침해되는 사례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인권이 단계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이고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의존성은 인권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아로



부터의 자유 또는 경제발전 없이 실질적인 인권, 특히 사회적 권리의 실현은 어렵다.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선거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보장 없이 인권의 실현은 어렵다. 즉 발전과 민주주의는 효과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의 전제 조건이고 인권은 발전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준다.

2) 도덕성, 우월성, 근본성, 추상성

그 밖에도 인권은 실정법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 바깥에 혹은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도덕적 권리이다. 따라서 실정법적 권리보다 우월하고 실정법적 권리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인권과 충돌하는 실정법적 권리는 인정될 수 없고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실정법 질서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존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근본적 권리이다.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권리가 인권일 수 없고 오로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권리만이 인권이 될 수 있다. 인권은 그만큼 의미 내용이 추상적이다.

인권의 의미 내용은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법적 권리는 모두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인권만큼 구체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권리는 없다. 따라서 인권은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 내용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작업이 된다.

3)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

타인은 자신과 다르지만 자신과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은 중요한 사회윤리적 가치이자 인권의 원칙이기도 하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의 삶이 균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안경환, 2008, p.20)라는 공식에 따라 비교 대상이 같으면 동등한 대우를, 다르면 차등적 대우를 요구한다. 또한 평등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사회권의 입장에서는 결과에서의 평등도 중요하게 간주된다.

차별 없는 평등에 관한 조항은 권리장전의 각 문서에서 가장 앞부분에 명문화되어 있다.

그만큼 평등은 인권의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¹⁵⁾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두 축인 자유와 평등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필수 불가결하다. 자유를 무시한 평등, 평등 없는 자유 모두 불완전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자유가 생명의 유지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면 평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그러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가치이자 원리이다. 인권의 역사는 더욱 많은 자유를 쟁취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통한 평등의 실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수자 보호

차별 없는 평등의 원칙은 소수자(minority)의 보호에 관한 제도를 통해 구현된다. 소수자 보호는 역사적으로 소수 종파에 속하는 종교인에 대한 관용에서 출발하여 인종 및 정치적 소수자로 확대되었다. 소수자란 보통 ‘종교, 문화, 사회적 신분, 언어, 인종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숫자, 신분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열세 또는 불리한 위치에 속한 집단’ 즉 사회적 약자를 의미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유색인종, 여성, 소수종교의 신자, 경제적 약자 등이 소수자에 속한다.

소수자는 다수자(majority)에 대응하는 개념이지만 양적인 숫자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리고 소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여성처럼 다수임에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도덕·종교적으로는 소수자이지만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항상 소수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자는 대부분 인종, 성, 언어, 종교 등에서 비롯되지만, 계급, 문화 등과 결합되면서 대개 복합적 차별과 중첩적 박탈감을 겪는다. 따라서 소수자의 문제는 가난과 소외와 같은

15)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을 상세히 규명하고 있는데 제30조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의 19개를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자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다양한 종합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 즉 ‘다수의 지배’를 기본원리로 한다면 인권은 소수자의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민주주의가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면 인권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모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한다. 역사에서 종종 드러났듯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 또는 파시즘으로 전락하곤 하였다.

5) 권리 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지만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 다양한 가치가 인권의 이름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언론의 보도 범위와 내용을 둘러싼 공중의 알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 범죄 수사과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자의 인권존중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사이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인권의 가치는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국가의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다. 즉 정책의 궁극적 이상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호와 증진이지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정책이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특정한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에 따라 기본적 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고, 양자가 모두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헌법상 요구되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정한 집단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표현된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요구가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도 중요하다. 여기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인권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5. 한국사회와 인권

1) 한국사회와 인권의 발전

인권의 현대적 개념과 인권보장의 제도가 서구사회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의 가치는 대다수 비서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인권의 가치는 과거 한국의 불교와 유교의 전통, 19세기 말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 그리고 기독교 사상 등에 내포되었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사상과 운동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발전은 민주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 왔는데 역사적으로 인권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만큼 인권도 증진되었다.

한국사회는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자마자 분단과 전쟁이라는 대규모 인권침해를 집단으로 경험하였다. 휴전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는 이후 남한과 북한 모두 인권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이 심각하게 제약되거나 부정되었고 불법연행과 감금 그리고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한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인권운동가가 실종되거나 의문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인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정부 또는 반체제로



간주되어 자의적으로 연행·구속되었다. 당시의 권위주의 정부는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조차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인권운동은 민주주의의 회복, 즉 민주화운동과 함께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발생하였다. 수많은 학생, 노동자, 지식인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수감되면서 양심수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한국사회에서 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되었고 국제인권단체는 물론이고 유엔으로부터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인권은 이른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수용되어왔다. ‘국가안보 없이 인권 없다’ 또는 ‘선 경제성장 후 인권보장’의 논리는 온갖 반인권 정책을 합리화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권위주의 정부는, 인권의 철저한 보장이 진정한 국가안보의 전제조건이며 지속 가능하고 질적인 경제성장은 인권의 보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권 중심의 접근 대신, 인권을 국가안보 - 실제적으로는 정권안보였지만 - 또는 경제성장의 장애 또는 걸림돌로 인식하였고 인권을 정치적 수사나 구호로 이용하였다.

한편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부가 증대하면서 경제·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조성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은 늘어났지만, 농촌과 도시 주변에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양산되었고 빈부 격차가 심화하면서 오히려 일부 계층과 집단의 생존권, 즉 경제·사회적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 농민 및 도시빈민 중심의 인권운동이 활성화되었다.

인권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1993년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군부의 권위주의 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정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 1997년 김대중 ‘국민정부’ 그리고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사회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진일보하였다. 특히 민주정권에 의한 과거청산 노력도 나름대로 결실을 맺어 인권 피해자의 배상과 명예회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 한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가입 직전인 1990년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계기로 유엔이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인권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엔 인권위원회 및 이사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아동권리협약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기구에 한국인이 독립적인 민간 인권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을 비준하였고, 이어 한국인이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과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권의 국제적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인권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청소년 권리헌장>과 <장애인 인권헌장>, 1999년의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인권기준 제정과 2000년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1년 <여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제도 설립은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엔의 권고안에 따라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로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국제기준에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위원회, 특히 인권이사회는 반복해서 ‘국가보안법이 한국이 가입한 인권조약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지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자의적 구금, 고문, 집회·결사의 자유, 성차별, 학생의 체벌, 호주제, 장애인, 양심(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형제도, 난민, 이주노동자 등 한국사회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조약위원회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4>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4〉 국제인권조약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인권이사회 (2008)	●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행과 선전(브라질) ● 유보없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브라질) ●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준수(인도네시아) ● 국가보안법 폐지(북한) ●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 개정 조치(북한) ●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 채택(북한)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 철회(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페루) ●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호 · 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알제리) ●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제화(알제리)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 범죄를 법제화(캐나다) ●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 제공,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캐나다) ●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 대우 혐의 조사(캐나다) ●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를 재검토(캐나다) ●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 채택(캐나다)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정책 수립시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캐나다) ● 강제실종방지협약 서명(프랑스) ●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 병역거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슬로베니아) ●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성인지적 관점 포함(슬로베니아) ●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 검토 권고(슬로베니아) ● 사실상 사형 집행유예(moratorium)를 유지(벨기에, 이탈리아), 사형제도 폐지 진전(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형폐지 특별법 법제화(네덜란드, 영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대로, CEDAW 제1조항과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 채택,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퇴치 노력 강화(벨기에)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 강화(체코) ●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포함 (체코) ●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명확성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실시(영국) ●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항 유보 철회(영국)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 사형제도 폐지법안 입법(룩셈부르크) ● 여성인권 증진을 우선적 인권이슈로 고려(이탈리아) ●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 시행(이탈리아) ●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 이행,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 개선(루마니아) ●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 실행(멕시코) ●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강화,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 담보 조치(멕시코) ● 해석을 통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미국)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 (2001)	● 통계관련 기구와 관계부처는 권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검토 ●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 규약에 모든 국내법(특별법, 규약가입보다 먼저 제정된 법 포함)보다 우선적인 지위보장 ● 신설된 여성부에 적절한 자원제공, 비정규직의 권리보장, 교사와 공무원의 단체교섭권·파업권 보장 ● 아동성매매와 아동 노동금지 및 피해자들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정부 내 주택문제 지원을 위한 전정을 다루는 담당관 지정,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거주지 제공 ● 공교육제도 강화계획 수립,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계획, 사교육에 비한 공교육 제도의 기능과 질에 대한 재검토,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교육 접근성에 대한 연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재평가 ● 인권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실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마련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 (2009)	대한민국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사회권위원회 주요권고 사항의 세부내용은 부록 참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1999)	● 인종, 피부색, 출신, 국적 등에 의한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 도입 ● 인종차별 처벌조항 도입 ● 다음 정부보고서에 정부가 취한 법적, 실질적 조치에 대한 설명 첨가 ● 외국인노동자 특히 불법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차별금지 규정 도입 ● 외국인거주자 차별 철폐 ● 혼혈아동 및 난민과 혼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의 제공 ● 구제절차 및 기관에 대한 접근 용이성 제공 (특히 취약그룹에 대한) ● 차별행위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제공 ● 인종차별철폐조약의 홍보, 교육, 훈련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도입
인종차별철폐협약 위원회 (2012)	● 낮은 난민 인정율(세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난민 인정 비율에 우려) ● 지연된 난민인정절차와 적법절차의 부재(난민 인정을 위한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하고, 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한 공무원을 추가적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신속화할 것을 권고) ●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제약 없고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 난민 등의 자녀의 출생등록 절차 부재(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이미 권고된 바(CRC/C/KOR/CO/3-4)와 같이 한국 내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신청자들의 자녀들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출생등록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 ●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고려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을 권고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고문방지협약 위원회 (1996)	● 고문범죄규정 도입 ● 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 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 ●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고문방지협약 위원회 (2006)	● 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국내의 형법에 고문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협약 제4조 2항과 같이 모든 고문행위가 범죄화 및 처벌됨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형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 ● 국가보안법에 따른 체포와 구금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고문 금지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강화 ● 고문 피해에 대한 주장을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장체계 강구 ● 고문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 마련 ● 심문과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판사의 신분보장 강화, 긴급체포의 남용 규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모든 구금 시설의 국제표준 준수, 군대 내 자살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마련 ● 부부간의 강간을 범죄로 인정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1998)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 ● 공사부문 여성지위향상 환경 유도 ● 여성정치 참여 및 교육 지원 ● 불완전고용에 대한 통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임금미지급 여성 노동 인정 ● 공사 영역 여성 동일보호 ● 여성 경제인 지원 ● 유급출산휴가 연장 ● 여성노동자보호에 노조역할 증대 ● ILO조약 110, 111호 비준 ● 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지원 ● 여성채용 차별 제거 ● 성희롱 금지를 위한 홍보 ●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교육 ● 농촌여성 지위와 복지보호 ● 여성결혼 연령 18세로 높일 것 ● 상속법 개선 ●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 조약에 대한 유보 철회 ● 조약과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2011)	● 협약 제16조 (g)항(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유보의 신속한 철회,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선택의정서 가시화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를 위법행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금지를 보장하는 효과적 감시 장치 마련, 성매매에 관여된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입법을 재검토 ● 결혼중개관리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증하는 입법 및 기타 조치취할 것 ●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 및 소녀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 ● 성적 착취를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유엔 국제조직 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정치적·공적 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잠정적 특별조치를 포함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차기 정기보고서에 노동 시장 지표에 관한 성별 분리 통계 제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실태를 성실하게 모니터링하고 정규직 여성의 수를 증가시킬 것 ●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보호 ● 여러 연령대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 특히 여성가구를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 공급 증대 및 적절한 가격으로의 제공 노력 강화 ● 더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정신적 건강 상태, 특히 우울증에 있어서의 악화 실태를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낙태 관련 법률 재검토를 고려할 것 ● 일반적 권고 24번에 부합하도록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야기되는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접근권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부합하도록 인권위에게 인권 전문가를 포함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분배할 것 ● 국가인권위의 양성평등 및 여성인권 영역을 포함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 ● 여성차별철폐협약 의무 이행에 있어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을 활용할 것 ● 여성 진전을 위한 국가 기구 역량 강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활용,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필요조치 실시) ● 여성차별철폐협약 9조에 부합하도록 한국 국적 취득 요건과 관련된 모든 차별적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국적을 관장하는 입법 수정,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유·무형자산 모두를 부부재산권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고 협약의 일반적 권고 21번 방침에 따라 이혼 시 동등한 부부재산권 배분에 대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 ● 이혼 결정에 있어 귀책사유를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것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1996)	● 조약 유보 철회 ● 조약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 소녀, 장애인, 혼외 출생자 보호 ● 아동관련 전문가 교육 ●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 ● 국적법개정 ● 체벌 금지 ● 최소 고용연령 조정 ● 입양제도 개선 ● 조약 이행체제 건설 ● 민간단체와 협력 ● 자료정보 수집체계 개선 ● 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 강화 ●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 강화 ● 양심, 표현, 결사 자유보장 ● 가족지원, 아동가장 지원확대 ●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 구축 ● 교육정책 재검토 ● 소년사법제도 개선 ● 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2011)	●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거나,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 ●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 추가 ●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 ●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 ●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

2)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문제¹⁶⁾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정치적 수인, 즉 양심수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는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의제이자 과제였다. 비록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에 의해 아직도 많은 학생과 노동자가 구속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이른바 ‘후진국형 인권침해’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 내 폭력과 같은 문제 또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자살하는 병사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군인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문제도 중요한 인권침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환경권, 정보인권,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권, 장애인, 신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같은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민주화와 함께 인권의식과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사회문제가 인권문제로 등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 분야 특히 사회복지 분야 인권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경제적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아래서 발생하는 분배의 불평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 극빈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생존권 위협, 공무원노조의 불인정,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한 합법적인 파업의 원천적 봉쇄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여전히 중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16)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마다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2002년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생명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인권, 교육에 관한 권리, 환경과 건강권, 사회보장의 권리, 여성의 인권, 사법과 인권,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장애인의 인권, 국제인권으로서 국제형사재판소, 난민, 탈북자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인권은 교통신호등

오늘날 인권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명방식 가운데 교통 신호등 또는 표지판은 인권이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왜 중요한가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신호등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즉 신호등은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도구이자 공동체의 약속을 실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교통표지판을 무시하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부 보행자도 신호등을 못 보거나 무시하고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다치기도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는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는 무지해서 신호등을 무시할 때 사고가 발생한다. 점증하는 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충돌은 사회적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져 공동체 내에서 무질서와 불안이 증대한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드는 정치·사회적 비용도 증대한다.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은 차를 가진 사람에게 번거롭고 귀찮은 대상일 수 있다. 보행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러나 원래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인권은 교통 신호등 또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에게 인권은 교통 표지판처럼 귀찮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은 희망이자 위안의 근거가 된다. 한편 신호등이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인권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 인권은 신호등처럼 공동체의 구성원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잡이이다.

결론적으로 신호등의 원활한 교통정리 역할처럼, 인권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자 건강한 사회적 질서를 만드는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인권 관련 주요 사건 연표

- 1215년 영국 마그나 카르타
- 1679년 영국 인신보호령
- 1776년 미국 독립선언
-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
- 1791년 미국 권리장전
- 1864년 국제적십자(아동권리협약) 창설 (제네바)
-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제네바)
- 1945년 유엔 헌장 채택 및 발효 (10월 24일)
- 1946년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창설 (파리)
-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 (CHR) 설립
- 194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설립
- 1948년 세계인권선언 (UDHR) 채택 (12월 10일)
- 1951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HCR) 창설 (제네바)
- 196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ICESCR) / 발효(1976)
- 1966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 (ICCPR) / 발효(1976)
-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 채택 (CERD) / 발효(1969)
- 1968년 유엔 국제인권회의 (테헤란)
-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채택 / 발효(1981)
- 1984년 고문방지협약 (CAT) 채택 / 발효(1987)
- 1986년 발전권에 관한 선언 채택
- 1989년 아동인권협약 (아동권리협약: CRC) 채택 / 발효(1990)
- 1990년 이주노동자보호협약 (MWC) 채택 / 발효(2003)
- 1993년 유엔 세계인권회의 (WCHR, 비엔나)
- 1994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HCHR) 창설 (제네바)
- 1995년 유엔 인권교육 10년 선포 (1995-2004)
- 199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50주년
-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 채택 / 발효(2002)
- 2000년 유엔 밀레니엄정상회의 (뉴욕)
- 2000년 유엔 인권옹호자보호 선언 채택
- 2001년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WCAR, 더번)
-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헤이그)
- 2003년 이주노동자보호협약 발효 (7월 1일)
-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 2006년 강제실종자협약 발표

한국의 인권 관련 주요 사건 연표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8년 헌법 제정 (7월 17일)
- 1979년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가입
- 1985년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가입
- 19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가입
- 1990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가입
- 1991년 아동인권협약 (아동권리협약: CRC) 가입
-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CHR) 위원국 첫 피선
- 1995년 고문방지협약 (CAT) 가입
-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비준 / 발효(2002)
- 1999년 성차별금지법 제정
-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
- 2000년 민주화보상법 제정
- 2001년 여성부 설립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 2007년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시행)
- 2009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장애인권리협약(CRPD) 가입
-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특별위원회 설치
- 2012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

사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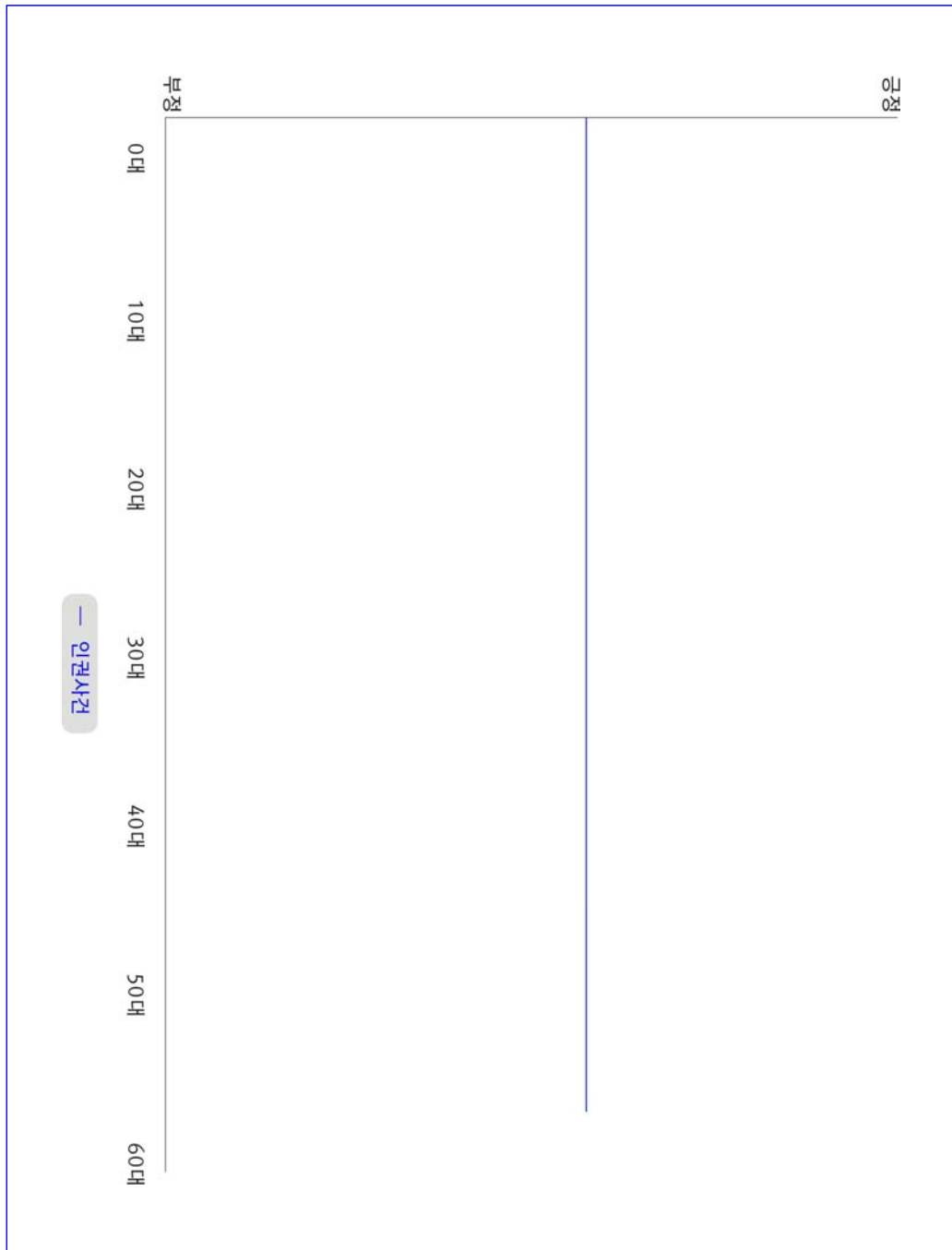
내 인생의 인권 사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인권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전 기간 나의 인권실현 수준이 어땠는지 아래 그래프에 표시해 보세요.

- 1)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떤 인권이 실현되었나요?
- 2) 인생의 어느 시기에 어떤 인권이 실현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 3) 혹시 인생의 특정 시기에 특정한 인권이 더 많이 실현되었나요? 그렇다면 그 인권은 무엇이었나요?
- 4) 인생의 특정 시기에 특정한 인권이 더 많이 실현되지 않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인권은 무엇이었나요?
- 5) 왜 인생의 시기에 따라 실현되었던 인권이 달라졌을까요?





사후
활동

숨어있는 인권을 찾아라

의미 없이 나열된 아래의 글자들 속에는 “인권에 다가가기”에서 다룬 인권 관련 내용이 10개 숨어 있습니다. 숨어있는 인권 관련 내용을 찾아봅시다.

통	염	항	특	환	자	충	편	향	계
동	택	격	촉	유	흰	양	평	등	울
형	세	빨	자	예	패	보	흥	판	맘
리	꿀	계	돈	흥	성	충	편	론	형
를	념	가	인	관	러	불	명	성	익
등	채	표	연	권	망	없	연	몇	쪽
쁘	점	호	켄	정	선	활	대	뜨	뽕
국	상	회	의	탐	흥	언	권	지	풀
령	샐	호	삶	자	스	력	명	달	칙
찰	차	툇	의	를	유	효	분	체	존
별	족	쿠	향	존	계	권	친	엄	꿀
밋	사	회	권	잠	성	차	성	폐	향
타	동	섭	쪽	결	촉	풍	트	무	현



Chapter 2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2. 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

“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린이집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영유아도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함께 하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이들의 인권실현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인권을 특별히 아동권리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영유아의 권리가 무엇인지 마주해볼까요?

”

사전
활동

내가 가졌던 권리, 내가 지켜준 권리

- 1)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누렸던 권리는 어떤 권리였나요?
- 2)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지켜준 권리는 무엇이었나요?
- 3) 나의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해준 권리는 무엇이었나요?
- 4) 어떤 권리를 지키려 했을 때 여러분은 자랑스러움을 느꼈었나요?



내가 가진 권리, 내가 지켜주는 권리

나의 권리 점수를 ✓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요?

01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
02 부모님이나 친척 등 나를 보호해줄 어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
03 나는 마음껏 공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
04 나는 원하는 친구를 사귀 수 있고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05 나는 학교나 가정에서 차별이나 따돌림을 받지 않습니다.	☐
06 나는 내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
07 부모님은 내가 나의 진로나 내 생활에 관해 의견을 말하면 잘 들어 줍니다.	☐
08 나는 원할 때 쉬고 놀 수 있습니다.	☐
09 어른들은 나의 이메일, 일기, 휴대폰 문자 등을 마음대로 보지 않습니다.	☐
10 나는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학대받지 않습니다.	☐

나는 얼마나 권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나의 권리지킴이 점수를 ✓해 보세요

01 나는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습니다.	☐
02 나는 피부색이 다르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
03 장애를 가진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달려가 도와줍니다.	☐
04 나는 우리에게 해로운 정보를 친구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05 나는 술이나 담배 등을 친구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
06 나는 모임에서 친구들이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해도 잘 들어줍니다.	☐
07 나는 허락 없이 친구의 이메일을 보거나 자료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다.	☐
08 나는 나의 생각이나 종교, 신념 등을 친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
09 나는 친구나 그 가족에 대해 함부로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
10 폭력을 심하게 당하는 친구를 보면 주변의 도움을 청합니다.	☐

출처 :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 소책자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니고 있듯이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또한 권리를 가진다. 이 인식은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 사회개혁가들은 아동 구제를 자신들의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일례로 어린이 노동에 대한 최초의 규제인 “도제의 건강 및 덕성에 관한 법”이 1802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후 지속해서 아동노동을 관리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나종일, 2012).

본격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20세기 이후이다. 스웨덴 교육학자인 엘른 케이는 “아동의 세기(The Century of Child)”에서 아동이 좋은 가정과 적절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폴란드의 야누슈 코르차크 역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명문화된 첫 번째 국제문서는 제네바 아동권리선언(Gener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이 선언은 1922년 아동복지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설자 에글렌타인 잼이 기초하고 1923년 제네바의 국제어린이구호협회(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Fund)가 채택하여 1924년 국제연맹이 승인하였다(나종일, 2012; 박병도, 2007; 이배근, 1998).

1)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전문과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을 중 의무를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으로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전문에 따르는 5개 조항에서 언급하는 아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신체·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아야 하며(제1조), 굶주리거나 병든 아동, 발달이 늦은 아동, 비행 아동, 고아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제2조), 위험에 처한 경우 가장 먼저 구제를 받아야 한다(제3조). 또한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받아야 하며(제4조), 아동이 지닌 재능의 개발이 인류 동포에게 공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육되어야 한다(제5조). 전문과 5개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성인이나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노홍, 2013).

2) 세계인권선언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발표 후 30년이 지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 1946년 유엔 총회는 유엔 어린이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을 창설하였다. 1948년에는 기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에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와 한 가족으로서의 어린이 존중”이라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생애 초기를 살아가고 있는 영유아 및 아동의 인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이 제시한 모든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세계인권선언 중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언급하는 조항은 제25조 제2항과 제26조이다. 제25조 제2항은 어머니와 아동이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적서에 관계없이 아동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려야 한다고 하였다. 제26조에서는 교육 받을 권리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
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학약)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목표로 하여야 한다. (학약)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유엔은 1959년 11월 20일 제네바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을 채택하였다(황옥경, 2012). 전문과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3.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5.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6.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7.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8.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1924년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 등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이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권조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박한비, 2014)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구속력 있는 일반 조약”(오병선 외, 2011, p. 60)으로 구체화되는 두 개의 국제조약을 채택하였다. 흔히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과 관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는 생존권, 주거·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는 생활수준 확보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나타나 있다.

1978년 2월 7일 폴란드 정부는 제34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기존의 아동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한지숙, 홍은주, 1998). 이후 지속된 10년 동안의 조약화 작업을 발판으로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이 완성되었다(박진완, 2010; 우병창, 2011; 하승수, 2012).

2. 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모색 끝에 탄생하게 되었다(우병창, 2011).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래 2015 10월 31일까지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6개국이다¹⁷⁾.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의 과정을 거쳐 12월 20일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최초의 국제조약에 해당된다.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제정한 것은 정부나 발전 계획 등의 논의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협약 외에도 국제사회는 소외되고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언급하는 선택의정서 3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이노홍, 2013). 전문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 등 관련 문서를 언급하고 인격체로서의 아동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54개의 조항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에는 제1조

17) United Nations(n.d.). Treaty Collection. Retrieved October 31, 2015, from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_no=IV-11&chapter=4&clang=_en

부터 제40조가 포함되며 각 조항은 실제적인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에는 제4조와 제41조부터 제45조가 포함되며 주로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3부는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이며 서명, 비준,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 유보, 폐기, 수탁자, 원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구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구성		내용
전문		
조항	1부(제1조부터 제40조)	아동의 정의,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아동의 4대 권리
	2부(제42조부터 제45조)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의 내용
	3부 (제46조부터 제54조)	서명, 비준,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 유보, 폐기, 수탁자, 원본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정의, 아동권리협약의 보편적이고 전향적인 4대 기본원칙¹⁸⁾과 성인과 다르없이 아동이 누려야 할 실체적 권리 등이다. 구체적으로 4대 기본원칙은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참여 및 의견 존중이다. 아동권리협약에 언급된 아동의 실체적 권리는 크게 시민·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영역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해당하는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기본적 건강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유아 인권교육 관련 자료들은 아동의 권리를

18) 여러 문헌은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을 서로 다른 용어로 표기하고 있다. 김태천(1996)은 차별금지,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 의견의 존중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4)의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 용어』에서는 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보호·발달, 아동의 참여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구정화(2009)는 이들 원칙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 및 발달 보장, 무차별, 아동 존중(아동참여)이라고 번역하였다. 유니세프(2012)에서는 이들 원칙을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참여 및 의견 존중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교재는 유니세프의 용어를 따라 작성되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도 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구체적인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아동권리협약 1부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	내용	영역
아동의 정의	제1조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제2조	차별 안하기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제6조	고유한 생명권	
	제12조	아동 견해 존중	
생존권	제6조	고유한 생명권	기본적 건강과 복지
	제7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8조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20조	부모 역할 대리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21조	기관입양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23조	장애아동의 보호	기본적 건강과 복지
	제24조	건강·의료지원	기본적 건강과 복지
	제26조	사회보장권	기본적 건강과 복지
	제27조	생활보장권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4) 기본적 건강과 복지(1,2)
	제30조	소수민족 아동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2조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3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4조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5조	유인·매매·거래금지	특별보호조치
	제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구분	조항	내용	영역
보호권	제7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0조	가족 재결합 출입국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11조	불법이송 및 미귀환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16조	사생활 보호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9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20조	부모역할 대리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21조	기관입양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22조	난민아동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23조	장애아동의 보호	기본적 건강과 복지
	제25조	양육 지정 아동 치료권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30조	소수민족아동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2조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3조	마약으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4조	성적학대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5조	유인·매매·거래 금지	특별보호조치
	제36조	기타 착취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7조	고문·사형 금지	시민적 권리 및 자유(1) 특별보호조치
	제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특별보호조치
	제39조	요보호아동의 지원	특별보호조치
	제40조	소년범의 상소권	특별보호조치
발달권	제6조	고유한 생명권	기본적 건강과 복지
	제9조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10조	가족 재결합 출입국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11조	불법 이송 및 미귀환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제12조	아동 견해 존중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3조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4조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5조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7조	정보 접근권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24조	건강·의료지원	기본적 건강과 복지
	제27조	생활보장권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4) 기본적 건강과 복지(1, 2)
	제28조	교육받을 권리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29조	교육의 목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휴식·여가 보장권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구분	조항	내용	영역
참여권	제12조	아동 견해 존중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3조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5조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7조	정보 접근권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8조	부모 양육의 지원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1,2) 기본적 건강과 복지(3)

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

1)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이다(우병창, 2011; 이노홍, 2013; 이배근, 1998; 하승수, 2012).

첫째,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동은 민족·인종·사회적 출신, 성별, 언어, 종교, 연령, 신체적 능력, 성적 기호,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최우선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 3조에 따르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 이익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모든 활동을 평가할 때 부모나 국가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셋째,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원칙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생명에 고유한 권리를 지니기에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특별하게 그들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참여 및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원칙은 아동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행정적 절차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 원칙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표 2-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비차별 원칙	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제6조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	제12조

2)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된다(이노홍, 2013; 이배근, 1998; 하승수, 2012). 그러나 각 권리 영역에 포함되는 협약의 조항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4대 권리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제7조 성명권과 국적권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이혜원, 2001). 또한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달권으로 구분되었던 권리가 참여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정보를 누릴 권리는 발달권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참여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진숙, 2014; 이배근, 1998).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살펴본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right to survival)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생존권에 해당된다.

둘째, 보호권(right to protection)은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이 밖에도 아동권리협약은 난민이나 소수민족 아동과 같이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발달권(right to development)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여기에는 교육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적절한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포함된다.

넷째,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유롭게 모임을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표 2-4〉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영역

권리 영역	내용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서비스
보호권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부당한 대우,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발달권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정보 접근, 생각과 양심의 자유
참여권	의사 표현의 자유, 아동의견 존중, 정보 접근, 모임의 자유 등

허중렬(2005)은 학교교육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아동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내용은 1조부터 5조에 이르는 총칙과 의견 표시권(12조), 언론·출판의 자유권(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권(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권(15조), 사생활 보호권(16조), 정보 접근권(17조),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권(23조), 교육받을 권리(28조), 교육목표 설정에서의 어린이의 인격존중 등의 권리(29조), 소수자 및 원주민 아동의 권리(30조), 휴식 및 여가, 문화 및 예술 활동권(31조),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 복귀권(31조) 등이다.

사후
활동

삐삐 룽스타킹!

삐삐 룽스타킹을 아시나요? 원래 이름은 삐삐 로타 델리카테사 윈도셰이드 맥크렐민트 에프레이즘 룽스타킹입니다. 빨강머리에 말괄량이로 유명하기도 하죠. 삐삐는 엄마와 아빠도 없이 원숭이와 말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돌봐주는 어른이 아무도 없는 큰 집에서요.

어른들은 학교도 가지 않고 깜짝 놀랄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만드는 삐삐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삐삐에게 어른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삐삐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삐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삐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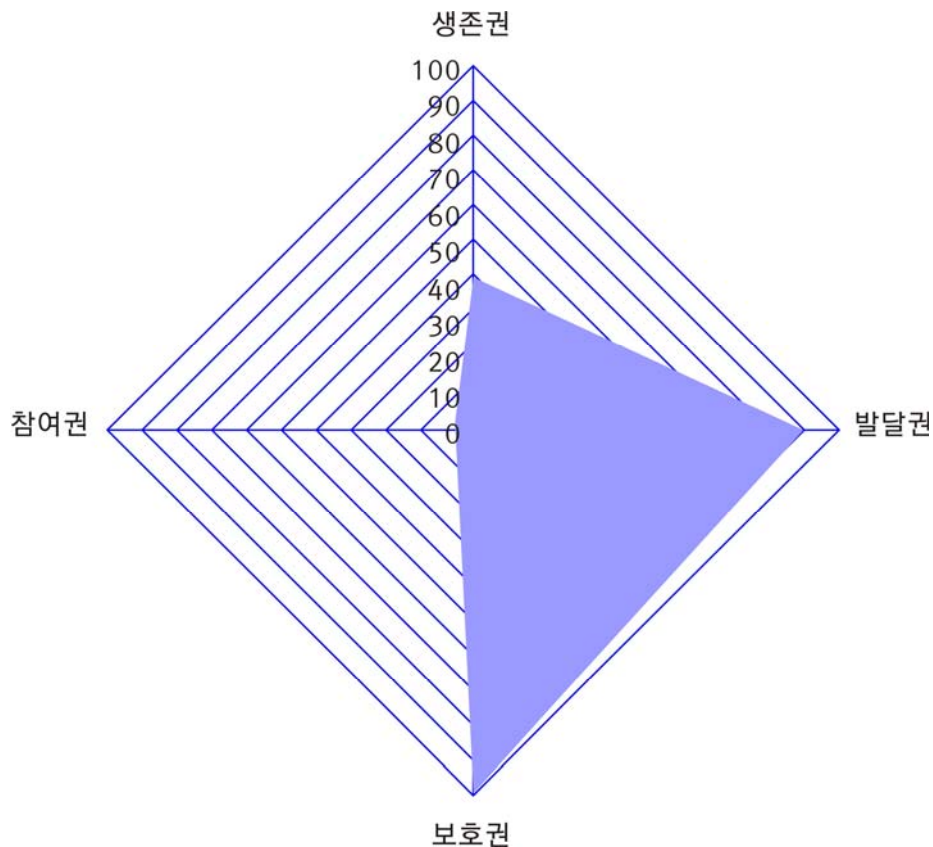
- 1) 영상 [지식채널e] ‘삐삐 어찌구 저찌구 룽스타킹’을 본다.
- 2) 삐삐와 삐삐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어른들과 판사의 역할을 맡는다.
- 3) 각 역할을 맡은 토론회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 의논한다.
- 4) 역할극 형식으로 토론회 본다.

사후
활동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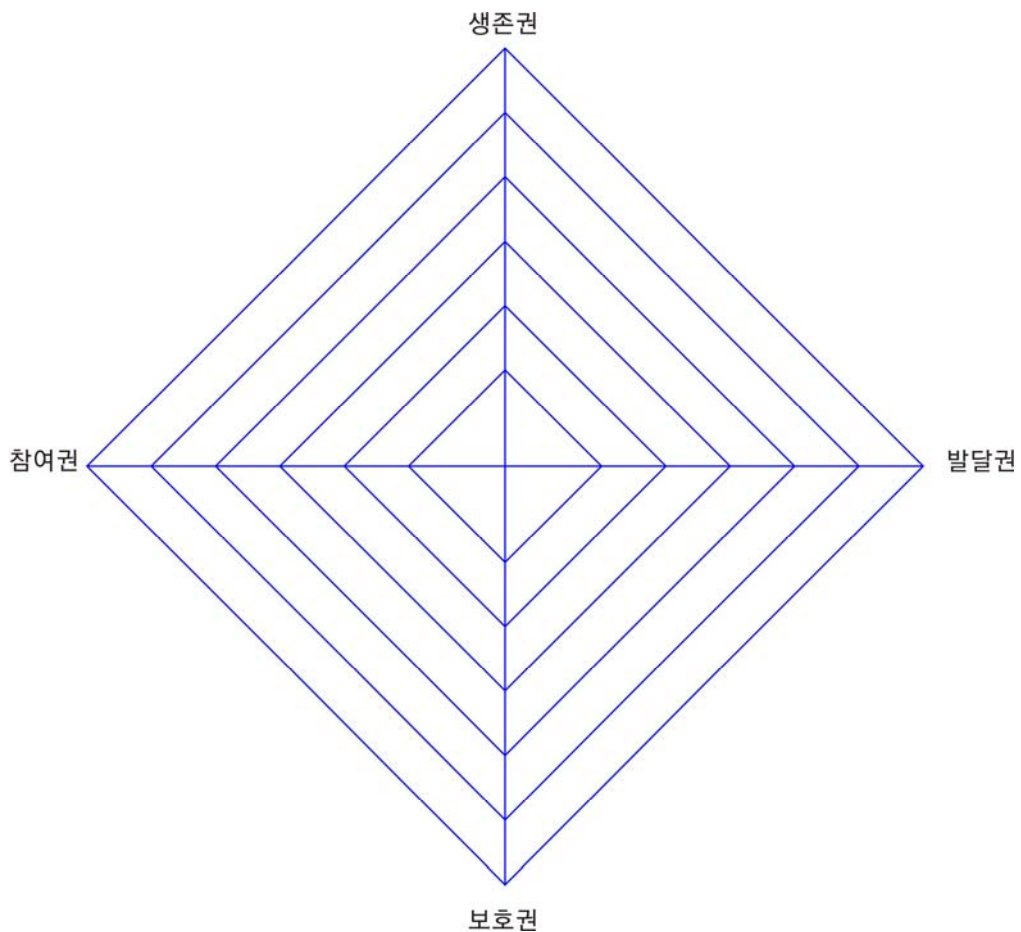
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 권리 영역이 고르게 실현되면 보육실에서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가 빛이 납니다.

누리반 선생님은 자신의 보육실에서 영유아들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래와 같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선생님의 보육실에서 볼 수 있는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를 아래 방사형 그래프에 그려보세요.
- 2) 선생님이 원하는 이상적인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를 그려보세요.
- 3) 선생님이 원하는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와 보육실에서 볼 수 있는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의 모양이 왜 다른지 생각해보세요.
- 4) 이상적인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Chapter 3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1. 권리주체로서의 영유아
2. 영유아 인권과 보육 그리고 보육교직원
3.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탐색하기

“

영유아보육과 영유아 인권실현은 서로 아주 닮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은 그 탄생부터 지금까지 영유아존중의 기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코메니우스, 루소, 로크, 프로벨 등의 철학자들이 아동 중심 사상을 주장한 덕분이지요.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 외에도 영유아보육과 영유아 인권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익숙한 보육을 조금은 낯선 영유아 인권의 관점으로 탐색해볼까요?

”

사전
활동

다시 살펴본 영유아보육의 주요 인물

- 1) 영유아보육의 철학·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주요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세요.
- 2) 여러 주요 인물 중 한 인물을 선택하여 그의 생애와 업적이 영유아 인권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 3) 옆자리에 있는 동료 교사와 의견을 나눠보세요.





1. 권리주체로서의 영유아

1) 영유아와 영유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영유아를 포함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맡길 수 없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규약에서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출생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인과 국가의 책임을 따로 명시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비준국은 자국의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관련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기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유해미 외, 2011; 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¹⁹⁾는 2005년 일반논평²⁰⁾ 7번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을 발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부터는 5년마다 제출한 이행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검토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개별 국가의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사망률, 출생등록과 보건의료 등의 생존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재연 외, 2015). 영유아가 아동권리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위원회는 영유아의 중요성과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일반논평 7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논평 7번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영유아 및 영유아기에 관련하여 재해석하고 영유아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일반논평 7번은 영유아를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모든 권리의 보유자로 규정하고 자신

19)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협약 비준국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전문가 단체이다(이재연 외, 2015).

20)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은 인권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 해석한 것이다(황옥경, 2012)

의 권리에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영유아는 미성숙한 인간에서 성숙한 성인의 상태로 사회화되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영유아는 그들 자신의 관심사와 이익과 관점을 가진, 가족과 공동체 및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다. 또한 일반논평 7번은 이후 삶의 결정적 토대가 되는 초기 유년기를 살아가는 영유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면서 이들이 직면하는 특별한 이익, 경험, 도전들을 존중하는 것이 권리 실현의 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 a) 유아는 일생동안 그들의 육체와 신경계통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며, 운동성, 의사소통 기술과 지능이 성장하고, 그들의 이익과 능력에 있어서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한다.
- b) 유아는 그들의 부모나 기타의 양육자와의 강한 감정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그들의 개성과 능력성장을 존중하는 방식의 양육, 보살핌, 지도와 보호를 필요로 한다.
- c) 유아는 또래의 아동들과 중요한 그들만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유아는 공유하는 활동을 협심하고 조정하는 것, 분쟁을 해결하는 것, 약속을 준수하는 것과 다른 이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학습한다.
- d) 유아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과 성인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한다.
- e) 유아의 가장 어린 시기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정서적인 안정, 문화적, 인격적 주체성, 그리고 능력개발의 기초가 된다.
- f) 유아의 성장과 발달 경험은 그들의 성, 생활 조건, 가족 구성, 양육 환경(care arrangement)과 교육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다.
- g) 유아의 성장경험과 발달은 아동의 필요와 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우, 가족과 공동체에서의 그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문화적 신념에 의해 유력하게 형성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p. 127).





영유아가 성인과 동등한 권리 보유자라는 인식은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다. 사실 인류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이 성인의 축소판이거나 부모의 부속물이라는 가족주의 관점을 훨씬 더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 이 지배적이고 전통적인 아동관은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종교적인 인간관에 저항하며 등장한 인본주의와 계몽사상으로 인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7세기 계몽사상은 아동을 성인과 분리된 존재로 보는 로크와 루소 등의 영유아 보육의 주요한 사상적 기초에 영향을 미쳤다(이경화 외, 2011). 영유아를 온전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관점으로 인해 비로소 이들을 자율성, 역량, 자기 결정,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Benedek, 2006).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동권리협약의 아동관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변용찬, 1999).

2) 권리주체인 영유아의 취약성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의존적이며 순수하고 미성숙한”(Mac Naughton, Hughes & Smith, 2007, p.164) 존재가 아니라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유아는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특별한 이익과 능력 및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지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ctor)”(국가인권위원회, 2006, p.125)이다. 따라서 영유아는 권리 실현에서 일정 부분 성인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영유아는 제한된 수준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언어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출생 직후 상당 기간 영아는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한 신체적 요구를 성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갖는 취약성은 점차 줄어들지만, 영유아기에는 성인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일차적인 양육자의 책임과 국가의 조력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과 이들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영유아가 타인에게 의존하여 권리를 실현한다고 해도 이들의 권리가 부모나 다른 성인의 권리로부터 파생되거나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Benedek, 2006). 게다가 성인에게 돌봄을 받는 상황에서도 영유아는 “비어있는 용기가 아니라...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능한”(Dalberg, Moss, Pence, 2007, p.105) 존재이다. 이에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 (2005)는 “영유아가 자신을 돌보는 성인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p.134) 적극적으로 구한다고 하였다. 즉 영유아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호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성인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이 속한 맥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구성원이다.

신생아와 유아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이지만 그들은 양육, 감독과 지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다... 신생아들은 출생 이후 그들의 부모(혹은 다른 양육자)를 매우 빨리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비언어적인 의사 교환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일차적 양육자와 강하고 다양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와 다른 양육자)는 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적 통로가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p. 133).

3) 영유아와 관련한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의 의미

일반논평 7번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이 영유아의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차별 원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영유아가 권리 실현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도 영유아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영유아에 대한 차별은 부실한 영양공급, 부적절한 보살핌이나 관심, 놀이, 학습과 교육에의 기회 제한, 감정이나 견해 등의 자유로운 표현 금지는 물론 가혹한 대우와 비이성적인 기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영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는 물론 전문가 및 아동에 대한 책임은 지는 사람들의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특별히 논평은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측정·대변할 수 있는 기관에 의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신체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모든 발달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과



심리사회적 복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생명·생존 및 발달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나쁜 생활환경, 유기, 둔감하거나 학대하는 대우는 물론 인간의 잠재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의 제한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논평은 참여 및 의견 존중의 원칙 측면에서 영유아가 어리다는 이유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유아는 이해나 의사소통 및 선택 등의 기본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적절한 방식으로 견해와 감정을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일상 생활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논평은 영유아의 참여권은 무엇보다 아동 중심적인 자세를 취하는 성인이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경청하고 이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영유아 인권과 보육 그리고 보육교직원

1) 영유아 인권과 보육

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가 권리 보유자이며, 영유아기가 권리 실현의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계기였고 영유아 인권의 개선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준비를 이끌어 내는 전환점 역할을 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1991년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다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반의 구축,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실태를 밝히는 지표 개발 및 권리증진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물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의 실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노력은 아동권리협약 가입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 1921년 우리나라의 첫 보육기관인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탁아 프로그램으로부터 지금까지 보육은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 보육의 주요한 전환기를 제공한 주요한 법률과 정책 등은 영유아의 인권실현 수준을 매번 한 단계씩 높였다.

우리나라 보육역사는 크게 제1기 아동복지법 시기(1921~1981), 제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1990), 제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1991~2003), 제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2004~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보육지원학회, 2015) 각 시기를 거치며 보육은 점차 영유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적·행정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보육의 주요대상은 초기 저소득층 영유아나 전쟁고아, 취업모의 자녀, 0~5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로 확대되었다.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을 기점으로 국가수준의 보육정책이 수립되었지만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이후와 마찬가지로 보육은 위탁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집중하는 구호적 성격이 강하였다. 이후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부모, 사회는 물론 국가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주체로 명시하였다.

1991년 1월 14일 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²¹⁾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 개념을 제도화하였고 보호, 교육, 건강, 영양, 안전 등을 포괄하는 보육 영역을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은 분산된 법령과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보육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나 비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천명하였다. 영유아보육법은 8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다음 2004년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이념을 밝히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차별받지 않고 보육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의무 등 공공성 강화, 보육의 전문성 강화, 품질 향상의 제도적 기반 확대 구축”을 요구하기 위해 개정되었다(한국보육지원학회, 2015, p.41).

이후 2013년 도입된 누리과정 역시 영유아가 누리는 인권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다. 누리과정을 채택함으로써 3~5세 유아는 자신이 다니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육·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영유아기

21) 1990년 3월 9일 서울 망원동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남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직장에 출근하면서 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을 찾지 못한 부모는 밖에서 문을 잠그고 출근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와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의 보육과 교육에 국가재정을 배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는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Thorpe, Boyd, Ailwood, & Brownlee, 2011).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영유아보육법 제2조)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영유아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보육정책과 법률 제정, 보육 관련자들의 인식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영유아 인권에 근거한 보육과정과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무이행자로서 영유아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보육을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이 필수적이다.

2) 의무이행자로서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조)로 정의된다.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행정 및 시설·환경의 관리를 담당하는 성인 구성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의무이행자이다(재인용, 이재연 외, 2015). 첫째, 보육교직원은 전문적 지식과 훈련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을 수행하며 이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자이다. 둘째,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탁받아 어린이집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무이행자이다. 즉 우리 정부는 어린이집이라는 체계와 보육교직원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보육교직원에게 의무이행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도 권리 주체라는 인식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

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의 가입 이후 우리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 영유아의 권리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교 급별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삶에 보육교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취업모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으로 가정 밖에서 양육되는 영유아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1,496,671명으로 전체 영유아의 54.58%에 이른다. 그리고 상당수 영유아는 하루 평균 7.4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서 보낸다고 한다(권미경 외, 2013).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권리침해 사례도 보육교직원의 의무이행자 역할을 강조하게 된 요인이다. 과거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 수준이 개선되었지만 어린이집에서 폭력, 체벌, 방치, 무시 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이재연 외, 2015). 영유아보육법(제18조의 2)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총 10,027건 중 0~5세 영유아의 피해사례는 2,310건(23.04%)이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그중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295건이었는데 이는 0~5세 영유아 학대사례의 12.77%를 차지한다.

3)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

보육교직원은 의무이행자로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Flowers, Bernbaum, Rudelius-Palner & Tolman, 2000). 그러나 의무이행자로서 보육교직원이 수행하는 역할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5)는 일반논평 7번에서 영유아의 권리 실현이 이들의 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사회적 활동, 경험과 학습을 위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양육, 정서적인 보살핌과 민감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의 권리실현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이들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의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무이행자인 보육교직원은 우선적으로 보육 이념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역할 수행은 오랫동안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보육교직원이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가지는 경험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육교직원 중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인적 요인으로 간주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 구성원으로 어린이집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보육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왔지만, 보육교사의 역할은 크게 양육자, 교수자, 관찰자, 지지자, 보육실 운영자 및 평가자로 구분되어 설명된다(한국보육진흥원, 2011).

- 양육자: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
- 교수자: 영유아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보육프로그램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역할
- 관찰자: 영유아의 발달 수준이나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상태, 행동특성 및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역할
- 지지자: 영유아를 믿고 옹호해 주고 지지하며 영유아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격려하고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 보육실 운영자 및 평가자: 영유아의 호기심과 탐구심을 자극하고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며 보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역할

4)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자질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이 필요하다.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존재인 영유아를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이들의 권리를 존

중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지도 및 지원요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일상적인 보육활동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와 발달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이해와 함께 아동 중심적인 보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 넷째,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어린이집 혹은 보육실에서 영유아가 하는 모든 경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권 실현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되기도 하지만 보육교직원의 의식적 각성과 실천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유해미 외, 2011).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실천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하는 것은 매우 결정적이다. 보육교직원은 자신이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내린 의도·비의도적 결정과 영유아와의 만남에서 자신이 가졌던 태도나 가치관을 살펴야 한다(이재연 외, 2015). 다시 말하면 보육교직원은 자신들이 미리 계획하여 운영한 보육활동과 함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과나 우연히 일어난 영유아의 모든 경험을 인권의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가진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평등하게 대했는지, 보육활동을 계획·실행하며 영유아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했는지, 영유아의 생존과 발달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공했는지, 영유아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갖는 모든 경험이 이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실현하는지 살펴야 한다.

의무이행자로서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영유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는지 성찰해야 한다. 인권교육이 인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영유아의 권리증진은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영유아는 성인이 주도하는 공간과 구조 속에서 살아가며 성인은 영유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현실은 영유아가 발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고 어떤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실행이 모두 성인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초래한다(유해미 외, 2011, p. 13)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는 동등한 권리주체이지만 그들이 현실에서 가진 힘과 권위는 같지 않다.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사회·정서·심리적 환경을 계획·운영·관리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가지는 주요한 경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존재이다. 게다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활과 삶의 방식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존재이다(이재연 외, 2015). 이처럼 성인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관계는 평등을 지향하지만, 불균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인 구성원은 자신이 영유아를 인격체로 존중했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는 방식이 성인 중심적이라면 일방적인 보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영유아의 권리가 증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현장의 구조적 지원

보육교직원이 의무이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자질과 노력도 요구되지만 구조적 측면의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구조적 측면의 지원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영유아 권리교육이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육교직원을 위해 현직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가 운영되고 있다. 외적인 위험요소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도 강화되었다(김인숙 외, 2011).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의 5대 안전교육과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인권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려면 보육교직원 대상의 교육 외에도 보육교직원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번에서 영유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가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서 일상적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권고하였다²²⁾.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보육교사의 개인적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직무환경은 보육교직원의 직무 지속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잦은 이직을 유발하고 결국 수준 높은 보육을 어렵게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Zaman, Amin, Momjian, & Lei, 2012). 게다가 열악한 직무환경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등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보육교직원 역시 권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에서 인권을 언급할 때 영유아 인권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이는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인권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이라는 구조·비구조적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이다. 즉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직원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연구를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영유아와 장시간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보육교직원이 느끼는 행복은 영유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이 점에서 본다면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손상 받지 않으며 주체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을 때 영유아 역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p.7). 따라서 영유아의 인권실현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 권고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교사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근로기준 준수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추가와 아동 인원 대비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3.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탐색하기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영유아의 인권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이나 영유아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담은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은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기본원칙과 권리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즉 영유아 인권과 영유아보육은 서로 분리된 두 영역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은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에 담긴 아동권리협약의 요소를 분석하여 보육과 인권의 교차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보육교직원은 이를 통해 자신이 수행하는 보육의 의미를 영유아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전 생애 중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보내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은 높은 윤리성과 책무성을 요구받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잣대로 윤리강령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2010)는 보육교직원의 직업 위상을 높이고 윤리적 원칙의 실천력을 높이고자 이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윤리강령은 서문과 영유아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동료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보육교직원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여 보육교직원이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신은수 외, 2013).

서문은 보육교직원과 윤리강령의 의의, 윤리강령이 다루는 범위,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의지와 자세를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을 보육교사의 윤리적 책임으로 분명하게 언급한다는 점이다. 또한 서문은 사랑과 전문지식 외에도 영유아에 대한 존중을 보육교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질임을 밝히며 영유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보육을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서문>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이며, 보육인은 사랑과 존중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므로 보육인은 윤리적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 본분에 임해야 한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스스로 책무성을 발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함을 밝힌다. 본 강령을 직무수행의 기준으로 삼아,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직무상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더불어 영유아와 그 가정, 동료와 사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보육의 실천으로 다각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써 영유아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는 영유아와 그 가정, 동료와 사회의 통합적·이상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중 영유아에 대한 윤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영유아에 대한 윤리>

1.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2. 성별,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 어떤 이유에서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3. 영유아는 다치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항상 안전하게 보호한다.
4. 영유아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행하지 않는다.
5. 어린이집 내외에서의 영유아 학대나 방임을 민감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6.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한다.
7. 개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영유아의 사회·정서·인지·신체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9.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10. 보육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한다.
11. 영유아의 개인적 기록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영유아에 대한 윤리 관련 내용은 모두 11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을 다루고 있다. 우선 기본원칙 중 비차별 원칙은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 하는 윤리적 책임에서 명시되어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특별히 9항에서 명시적으로 “영유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책무에서 언급되고 있다.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은 실질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윤리 전 항목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의 목적을 고려하면 잘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은 10항의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보육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책무로 언급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윤리강령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실현을 보육교직원의 윤리적 책임으로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윤리 1항은 영유아의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인 생존권에 관련되어 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존권 실현을 위해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영유아에 대한 윤리 3항부터 5항 그리고 11항은 영유아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에 관련되어 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호권 실현을 위해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서·언어·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으며 혹시 학대·방임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 영유아와 그들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영유아에 대한 윤리 6항부터 9항은 영유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인 발달권에 관련되어 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하고,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정서·인지·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가와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에 대한 윤리 10항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인 참여권에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보육활동에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영유아에 대한 윤리>

1.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 생영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누릴 권리
2. 성별,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 어떤 이유에서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 성별,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의 배경에 의한 차별금지
3. 영유아는 다치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항상 안전하게 보호한다.
↳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영유아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행하지 않는다.
↳ 신체·정서·언어적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5. 어린이집 내외에서의 영유아 학대나 방임을 민감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받을 권리
6.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한다.
↳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육받을 권리
7. 개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개별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법으로 신체·정신·도덕·사회적 발달을 지원
8. 영유아의 사회·정서·인지·신체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전인적 발달 지원
9.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협력하여 발달을 지원
10. 보육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한다.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11. 영유아의 개인적 기록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가정에 대한 윤리는 보육교직원에게 가정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어떤 윤리적 책임을 해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력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삶은 물론 이후의 삶 전체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Driscoll & Nagel, 2008, 재인용). 유감스럽게도 많은 보육교직원은 가정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보육교직원과 부모가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거나 기대가 다른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놀이 중심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인지적 학습의 가치를 믿는 부모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가정과의 협력은 보육교직원이 의무이행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가정의 주요 양육자는 보육교직원이 담당하는 영유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잘 이해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할 수 있다. 한편 의무이행자로서 보육교직원은 가정이 인권친화적인 맥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영유아의 권리가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실현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갖는 경험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주요 양육자가 영유아 중심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가정에 대한 윤리>

1.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가정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 각 가정의 양육 가치와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3.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지역, 문화, 관습, 종교, 언어 등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유아의 가정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4. 보육활동 및 발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영유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는다. 다문화,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을 도모한다.
5.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영유아 가정의 알 권리에 응한다.
6. 보육프로그램과 주요 의사결정에 영유아의 가정이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7. 필요한 사회적 지원, 전문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가정의 복리 증진을 돕는다.
8. 영유아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동료에 대한 윤리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원장을 위한 윤리강령의 내용은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상 책임과 보육교사의 직무 환경을 바람직하게 만들어야 할 책무를 담고 있다. 반면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은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과 복지를 구현하는 역할을 담당할 책임을 밝히고 있다.

앞서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권리 실현은 영유아는 물론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다.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은 자신들이 속한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보육교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보육을 가능케 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동료에 대한 윤리>

<어린이집 원장>

1. 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물적 환경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2. 보육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3. 성별, 학연, 지연, 인종, 종교 등에 따라 보육교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4. 업무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보육교사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한다.
5. 보육교사에게 지속적 재교육 등 전문적 역량 제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6. 보육교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보험, 급여 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복지증진에 힘쓴다.
7. 보육교사 개인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보육교사>

1.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2. 상호 간 역량개발과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이 되도록 힘쓴다.
3. 어린이집 원장 및 동료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
4.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5.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인권과 복지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윤리강령위원회” 참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윤리강령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가 어린이집이 갖는 보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리강령은 보육교직원의 의무이행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자신이 소속된 어린이집이나 혹은 담당하는 학급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윤리강령은 보육교직원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공동체가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영유아의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지켜본다는 점에서 성인 중심의 사회에 영유아의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책임자이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영

유아의 인권이 가정이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와 같은 거시적인 사회환경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사회에 대한 윤리>

1. 공보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항상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정책이 발견될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3. 공적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4.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 결정 및 법률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으로 이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다 .
5.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어린이집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을 쉽게 수정하여 윤리강령의 부속물로써 ‘보육인 윤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총 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육인 윤리선언은 다음과 같다.



보육인 윤리 선언

“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교사로서 직무상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
다음 사항들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1. 나는 내가 영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항상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한다.
1. 나는 영유아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1. 나는 영유아 가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신뢰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다.
1. 나는 동료로 존중하고 지지하며, 서로 협력하여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 나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영유아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선다.
1. 나는 ‘어린이집 원장, 교사 윤리강령’을 직무수행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아 진심을 다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을 영유아의 인권 측면에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육교직원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 보육을 실천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가정이 영유아의 삶의 중요한 맥락임을 인식하고 가정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여 영유아의 인권이 어린이집은 물론 가정에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각자 자신이 맡은 직무상 책임을 다하고 어린이집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인권실현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과 영유아의 인권실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보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보육교직원 윤리강령은 보육교직원을 영유아의 인권실현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보육활동이 당연하게 영유아의 권리 실현으로 이

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갖는 모든 경험에서 실현되려면 보육교직원이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이해와 함께 이를 보육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실천을 인권의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서영숙 외(2009)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의 모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육교직원이 다수의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육 일과를 진행하자면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직원의 역할 사이의 갈등 혹은 영유아 사이의 권리 충돌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발달하는 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거나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요구나 의사 표현을 때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로 생각하고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이재연 외, 2015). 게다가 보육교직원은 모두 일과를 순조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 때문에, 영유아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상반된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영유아의 권리 실현은 영유아에게 우호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자신이 보육을 수행하는 방식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친화적 보육과 그렇지 않은 보육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후
활동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진단표

본 체크리스트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 센터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영유아의 권리 존중에 대해 이해하고 계시는지 어떤 실천이 더 필요한지 진단표를 작성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번	내용	확인
1	어린이집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1	낮잠 및 휴식에 대한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시간, 공간)을 조성해주고 있다.	☐
1-2	대·소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놀이하려는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3	급·간식에 대한 영유아의 기호, 먹는 속도와 양을 존중해주고 있다.	☐
1-4	배변, 배뇨 등 영유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1-5	보육교직원은 일관성 있는 태도로 영유아의 욕구를 존중해주고 있다.	☐
2	영유아가 보육과정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까?	
2-1	영유아가 만든 결과(작품, 사진, 노래, 블록, 구조물 등)에 대해 존중하며 적절히 게시되어 있다.	☐
2-2	영유아의 의견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
2-3	규칙을 정할 때는 영유아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3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영유아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3-1	영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놀이에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지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
3-2	영유아의 흥미, 관심, 기분 및 건강상태를 전반적인 맥락으로 파악하고 있다.	☐
3-3	영유아 간의 관계를 살피며 상호 역동성을 파악하여 상호작용한다.	☐

연번	내용	확인
4	영유아 권리 실천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방하고 있습니까?	
4-1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4-2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4-3	양육자의 보육실 참관(절차 및 방법, 안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양육자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5-1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의 소통을 위해 영유아의 전반적 상태(기분, 건강, 배변 등)와 가정 내 주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
5-2	양육자에게 규칙적인 등·하원 시간 등 안정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
5-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자와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6	영유아 권리 존중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1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
6-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을 이수하였다.	☐
6-3	영유아 권리의 기초가 되는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7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7-1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근무환경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7-2	보육교직원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8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해 보육교직원 간 협의·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1	어린이집 운영(보육과정, 특별활동, 견학, 행사 등)의 계획과 평가에 보육교직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
8-2	반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체 회의를 통해 협력 및 해결하는 구조가 있다.	☐

출처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참고 수정.

사후 활동

인권으로 다시 쓰기

영유아가 등장하는 동화(영화)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가장 최근 영유아에게 읽어주신 동화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동화(영화)에 등장하는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었나요?

혹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나요?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동화(영화)를 다시 쓴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Chapter 4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1. 딜레마 상황
2. 보육 일과 속 영유아의 인권

“

참여하는 것,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싶다고 충분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놀이하는 것, 보호받아야 되는 거요.

(영유아 인권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H교사의 답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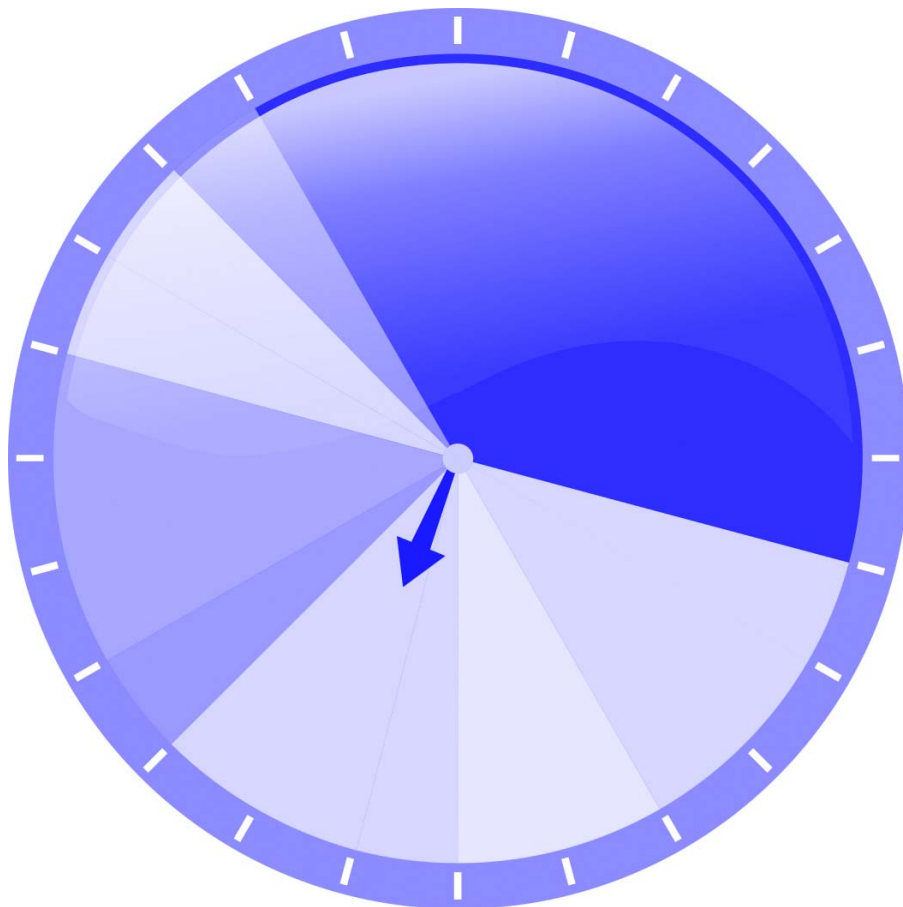
사전
활동

나의 하루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 고요함부터 모든 아이가 하원한 다음의 적막함까지...

고요함이 적막함이 되기까지 적어도 8시간 동안 아이들은 성장하고 선생님은 분주하게 보육교사로 살아갑니다. 선생님의 일상적인 하루로 아래 일과표를 채워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일들은 영유아의 어떤 권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 딜레마 상황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어떤 결정은 윤리강령, 표준보육과정,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하여 큰 갈등 없이 내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이 서로 다른 경우에 불안과 혼란을 겪는다. 영유아의 선택이 그들 자신이나 다른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혼란 속에서 보육교직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방향이나 순조롭게 일과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이 영유아의 권리 실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유감스럽게도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위해 내린 모든 의도·비의도적 결정이 영유아의 권리 실현을 당연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은 주로 영유아의 안전과 균형 있는 성장과 학습을 위해 정해진 규칙과 일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규칙과 일과가 영유아의 자유선택과 자발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Bae, 2009).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의 실현은 인권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유아의 인권실현은 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보육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할 때 가장 먼저 영유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동과의 협의가 없이 성인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Winter, 2011).

어린이집이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맥락이 되려면 보육교직원이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인권실현을 위한 보육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인권친화적 보육의 관점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유엔은 인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경험의 기반 위에서”(2006, p.28) 인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보육 일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찰하면서 영유아의 인권에 접근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제시된 상황은 등원, 자유놀이시간, 자유선택활동, 대집단 활동, 정리정돈, 점심 등의 일상적인 보육 일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모든 상황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서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으로 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가상의 인물이다. 이 장에서 제시된 상황은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보육교직원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과 딜레마를 포함하고 있다. 딜레마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각 상황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영유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딜레마를 묘사한다.

보육교직원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천적인 대안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인권감수성을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양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영유아의 인권실현을 위한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과 성찰의 과정은 3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제시된 상황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보육교직원은 상황에 등장하는 영유아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었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단계는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을 성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은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에 공감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여러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인권친화적 보육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보육 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조항	내용
비차별 원칙	제2조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활동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때 최우선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제6조	모든 아동은 자신의 생명에 고유한 권리를 지니기에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	제12조	아동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권리 영역	조항	내용
생존권	적절한 생활 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서비스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부당한 대우,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정보획득, 생각과 양심의 자유 등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권	의사 표현의 자유, 아동 의견 존중, 모임의 자유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

2. 보육 일과 속 영유아의 인권



1.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요.

<2세 반 미영이는 엄마와 함께 어린이집 현관에 울면서 들어오고 있다.>

엄마 : 미영아,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미영 : 싫어.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엄마 다리를 껴안고) 엄마랑...

엄마 : 엄마는 회사 가야 돼. 얼른 들어가!

미영 : 싫어. 싫어. (엄마의 다리를 잡고 운다.)

교사 : 미영이 안녕? 미영이 엄마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또 울고 있네.

(두 팔을 뻗어서 미영이를 안으려고 하면서)

선생님이랑 교실에 가자. 친구들이 기다려!

미영 : (교사의 손을 치우며) 아냐! 싫어.

엄마 : 미영아... 엄마랑 약속했잖아. 엄마가 데려다주면 울지 않고 들어간다고...

교사 : (엄마에게) 어머니 얼른 가세요. 미영이는 제가 교실로 데리고 갈게요.

(미영이를 안아서 빠른 걸음으로 교실로 데리고 간다.)

미영 : (팔다리를 휘저으며 울면서 큰 소리로) 엄마... 엄마.

엄마 : 미영아! 엄마 회사 갔다가 빨리 올게. 잘 놀고 있어.

교사 : (미영이를 안고 교실로 들어온 후 의자에 앉으며)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 가방 정리하세요.

(10분 동안 미영이가 계속 울자 교사는 미영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사물함 쪽으로 간다.)

아이들 : (교사에게 미영이를 가리키며) 선생님, 재?

교사 : (다른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어? 슬프대.

아이들 : 왜요?

교사 : (미영이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잠깐만... (미영이에게 와서) 미영아! 이제 그만 울어. 계속 울면 친구들이 '울보!'라고 놀려요. 울보라고 하면 좋아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으면 엄마가 퇴근해서 데리러 오실 거야. 얼른 눈물 닦고 놀이하러 가세요.

② 위 상황에 등장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Q) 미영이는 아침에 엄마와 헤어지면서 왜 울었을까요?

Q) 교사는 울고 있는 미영이와 당황한 부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사는 왜 미영이를 안고 교실로 들어왔을까요?

Q) 교사는 왜 미영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른 영아들에게 갔을까요?

Q) 다른 영아들은 교사와 미영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③ 미영이와 미영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④ 미영이와 미영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유아는 때때로 어린이집 현관이나 보육실 앞에서 여러 가지 등원 거부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보육실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등원 거부 행동은 학기 초에 많이 나타나지만, 학기 중 어느 날 불쑥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유아들은 등원 거부 행동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영유아들은 양육자와 분리되면서 느끼는 불안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 다니게 된 어린이집에 대한 두려움과 선생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어색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인은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유아가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이를 영유아의 자기표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을 수정해야 할 대상이거나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는 자신의 발달 수준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견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영유아가 언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의견과 감정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이나 오전 일정에 쫓기는 양육자는 영유아의 등원 거부 행동으로 난처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보육교직원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조로운 일과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압박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교사는 영유아와 양육자를 빨리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육자와 영유아를 빨리 분리하는 것이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정일까요? 영유아가 좀 더 자신의 슬픔을 다독이고 양육자와 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영유아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실로 들어선다면 먼저, 영유아의 울음에 담겨있는 의미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세요. 기분이 좋지 않은 영유아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만져주며 아침 인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영유아에게 아침은 먹었는지, 어린이집에 오기 전에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등등을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의 위로와 공감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과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다른 기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영유아가 평소 좋아하는 활동이나 전날 시간 때문에 중단했던 활동을 완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된 일과 중에서 영유아가 좋아할 만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좋아하는 간식이나 활동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슬픔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영유아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세요.

자유
놀이시간

2. 내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2세 반 자유놀이시간 블록 놀이에서 민호는 창현이 옆에 앉아서 창현이가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보고 있다.>

창현 : (민호를 향해 미소를 보이며 장난감 차를 굴린다.) 뽀옹, 뽀옹.

민호 : (창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 차 쪽으로 손을 뻗는다.)

어, 어, 빨간 차!

(창현이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 차 쪽으로 더 가깝게 손을 뻗는다.)

<이때 반대편 역할 영역에 있던 교사가 창현이와 민호 쪽을 보고는 굳은 표정으로 간다.>

교사 : (빠른 걸음으로 민호 쪽으로 달려와) 어, 어, 그건 아니지!

(민호를 두 손으로 번쩍 안아서 반대편 역할 영역 바닥에 내려놓는다.)

민호 : (입을 벌리고 멍한 표정으로 교사와 창현이 쪽을 번갈아 본다.)

교사 : (민호에게) 친구 장난감 잡으면 안 되죠! 여기서 놀아요. (하고는 다른 곳으로 간다.)

민호 :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창현이 쪽을 본다.)



② 위 상황에 등장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Q) 민호는 창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자동차에 왜 손을 뻗었을까요?

Q) 교사는 왜 민호를 안아서 블록 놀이에서 역할 놀이로 옮겼을까요?

Q) 블록 놀이에서 역할 놀이로 옮겨진 민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 ③ 상황에 등장하는 두 영유아(민호와 창현)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어떤 모습 일까요?

- ④ 민호와 창현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신체적 안전은 어린이집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 안팎의 노력 결과로 어린이집은 과거보다 훨씬 영유아의 신체적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의 각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이나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은 놀잇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또래와 갈등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때때로 몸싸움으로 번져 영유아들의 얼굴이나 몸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영유아들이 보육활동 중에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면 보육교직원은 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물론 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가 감지되면 민첩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위 상황에 등장하는 교사는 민호가 손을 뺀 행동을 보고 민호와 창현이가 놀잇감의 소유권 때문에 다툰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를 피하고자 민호를 변쩍 안아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창현이가 가지고 놀던 놀잇감에 왜 손을 뺐었을까요? 어쩌면 교사가 생각한 것처럼 민호는 창현이의 놀잇감 차에 관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창현이가 하는 자동차를 미는 놀이에 호기심이 생겨 따라 해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창현이의 옆에 놓여있던 놀잇감을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창현이에게 손을 뺐었을 수 있습니다. 민호의 행동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민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 영유아에 적절한 지도와 지원에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민호가 창현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을 빼앗으려 했다 해도 교사가 민호를 지도하는 방식은 인권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서 성인의 물리적 행동과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물리적 접촉이 일정한 정도의 고통, 불편함, 혹은 굴욕을 유발하는 고의적이고 징벌적인 힘의 사용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안아 들어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민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누군가 갑작스럽게 선생님을 원래 계시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당황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죠?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영유아도 느낍니다. 다만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할 뿐입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
선택활동

3. 다른 놀이하고 싶어요!

<3세 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던 놀이를 정리하고 조형 영역으로 모이라고 말한다>

교사 : 오늘 준비한 활동은 목걸이 만들기야. (바구니 안을 살피며)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수영 : 난 이거 하기 싫은데... 난 여기서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민호 : 우리 구슬 놀이할 거지.

교사 : 구슬 놀이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목걸이 만들기를 해보자.

민호/수영 : 싫은데... 이따가 할래요.

교사 : 싫어도 오늘은 계획한 놀이를 해야 돼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야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지.

② 위 상황에 등장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Q) 수영이와 민호는 왜 교사에게 목걸이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까요?

Q) 교사는 왜 구슬 놀이를 하고 싶다는 수영이와 민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Q)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놀이를 할 수 없다는 교사의 말에 수영이와 민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③ 수영이와 민호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④ 수영이와 민호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든 영유아가 자신들이 만든 목걸이를 가지고 하원 하는데 민호와 수영이만 빈손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수영이와 민호의 부모님은 자녀들이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겁니다. 혹은 자녀들이 공평하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육교사는 수영이와 민호가 구슬 놀이를 먼저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상황에 등장하는 교사처럼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의 요구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집과 가정의 협력은 수준 높은 보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양육자의 요구나 평가를 먼저 고려해서 보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육교직원은 보육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한창 놀이를 진행하고 있을 때 대집단 활동으로 목걸이 만들기를 해야 한다면 영유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유놀이나 자유선택활동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참여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영유아들은 어떤 영역에서 누구와 어떤 활동을 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사가 목걸이 만들기를 제안한다면 영유아들은 자신의 결정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유아들은 교사의 기대와는 달리 목걸이 만들기를 작업(일)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들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활동을 놀이가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기대와 달리 목걸이 만들기는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목걸이 만들기가 영유아에게 필요한 활동이라면 자유놀이/자유선택활동의 새로운 활동으로 소개하면 어떨까요?

영유아들은 자신이 하는 놀이를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놀이가 그저 즐겁고 기쁨을 주는 활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은 친구들과 놀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주제의 놀이를 할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어떤 소품을 사용할지 등등을 결정하기 위해 또래와 상의하고 약속을 만드는 어려운 과정을 거친 다음 놀이가 비로소 진행됩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영유아의 놀이는 이들이 현재 가지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창조해낸 결과물입니다. 이런 놀이를 갑작스럽게 끝내는 것은 영유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영유아가 창조해낸 결과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집단
활동

4. 이 활동 안하고 싶어요!

<4세 반 교실에서 이야기 나누기 후 가족 그림을 그리는 조형 활동이 이어진다>

교사: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가족 그리기를 해야 돼. 여기 도화지 한 장씩 받아서 가족 그림을 그려 주세요.

소영: 우리 가족 다요? 아빠, 엄마, 내 동생도요?

교사: 네. 가족 모두 그려 주세요.

지민: 전 하기 싫어요. 전 저기(블록 영역)에서 놀이하고 싶어요.

교사: 그림 다 그리면 놀이 시작할 거야. 친구이랑 같이 그림부터 그리자.

지민: (도화지의 끝을 만지작거리면서 도화지를 접으며) 저.. 저는 이거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교사: 친구들도 조금 어려워도 참고 그림 그리잖아. 빈자리에 앉아서 그림 그리자.

지민: (빈자리로 가지 않고 종이를 만지면서 서성이다 종이가 찢어지자) 선생님! 종이 찢어져서 저 이거 못해요.

교사: (높아진 목소리로) 지민!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는 시간이라고 말했어. (도화지를 다시 주며) 그리고 누가 종이를 찢니? 이걸로 가족 그림 그리세요. 가족 그림 그리기 다 해야 놀이할 수 있어요.

지민: (고개를 숙이고 있다)

② 위 상황에 등장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Q) 지민이는 왜 가족을 그리는 활동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Q) 교사는 왜 지민이의 싫다는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민이에게 그림그리기를 요구했을까요?

Q) 자신이 하고 싶었던 놀이를 할 수 없다는 교사의 말에 지민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③ 상황에 등장하는 지민이와 지민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④ 지민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육교사는 보육과정을 토대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활동에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유아가 교사가 계획한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유아들은 참여 자체를 거부하거나 성의 없이 대충 활동을 마무리 짓고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준비한 활동에 대한 영유아들의 참여나 호응이 낮다면 먼저, 활동이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절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들은 자신 없는 활동이나 낯선 활동을 시작할 때 주저합니다. 이럴 때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가족 그림 그리기 활동을 계획하면서 어떤 보육목표를 세웠을까요? 아마 영유아가 가족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기는 영유아를 보육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영유아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하면서 지식, 기술,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지민이가 즐거워하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안하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고마움을 표현하는 카드를 꾸밀 수 있고 노래나 춤으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려면 보육활동의 편성과 운영에서 개별 영유아의 개성과 능력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준비된 활동이 꼭 영유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안 하고 싶으면 내일 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세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자신 없는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영유아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영유아들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주저함을 보인다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 주세요.

영유아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에서는 굴욕적인 신체적 처벌은 물론 비물리적 처벌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8에서 “신체적 혹은 물리적 처벌을 물리적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처벌”(국가인권위원회, 2006.p.155)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이나 도구로 때리는 것은 물론 “차는 것, 흔드는 것,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뽑을 때리는 것,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혹은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등을 포함합니다. 비물리적 처벌에는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영유아를 비웃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리정돈

5. 더 놀고 싶어요!

<4세 반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지영이는 쌓기 영역으로 갔다가 약속된 인원 수 만큼 친구들이 놀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작 영역으로 가서 놀이를 한다. 한 아이가 쌓기 영역에서 조작 영역으로 오자 지영이는 퍼즐을 정리하고 쌓기 영역으로 가 블록 바구니를 꺼내 카펫에 앉았다. 그때 교사가 정리를 알리기 위해 음악을 튼다.>

교사 : 이제 놀잇감 정리하세요. 정리시간입니다.

지영 : 선생님! 저 아까부터 이거 하려고 기다렸다가 이제 놀이할 건데... 전 더 놀고 싶어요.

교사 : 아니에요. 지금은 정리시간이야. 블록 놀이는 내일하고 지금은 정리하자.

지영 : 난 기다렸는데... 난 기다렸는데...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블록 바구니를 정리한다.)

② 위 상황에 등장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Q) 지영이는 왜 시간이 더 필요했을까요?

Q) 교사는 왜 지영이에게 시간을 더 주기 어려웠을까요?

Q)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지영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③ 상황에 등장하는 지영이와 지영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④ 지영이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해진 자유놀이나 자유선택활동이 끝났는데 영유아들이 놀이시간을 더 요구하면 보육교사는 당황하게 됩니다. 계획에 따라 일과가 진행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후 진행될 일과가 다른 학급이나 어린이집의 전체 일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영유아에게 놀이를 언제 정리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유아들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기다릴지 혹은 다른 놀이를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놀이나 자유선택활동 이후의 일과가 다른 학급이나 어린이집 전체 일정과 관계가 없다면 영유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오래 놀이를 하도록 해주세요. 보육과정은 미리 수립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영유아의 흥미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유아가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오래 자유놀이나 자유선택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면 상황 변화에 따라 일과를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갑작스러운 일과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일과를 진행하지 못하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유아의 흥미와 요구에 귀를 기울여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영유아를 존중하고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보육이 아닐까요?

인권친화적 보육은 영유아가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임이 아닙니다. 교실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영유아는 자신과 또래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가 사회적 약속을 내면화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려면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아쉽지만 놀이를 정리하는 영유아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특히 영유아가 자신이 계획했던 놀이를 하지 못하고도 선뜻 정리정돈을 시작할 때 이런 인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왜 계획했던 놀이를 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교사들은 자유놀이나 자유선택활동을 운영하며 영역별로 놀이할 수 있는 영유아의 수를 제한하는 약속을 정하기도 합니다. 한 영역에 너무 많은 영유아들이 몰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지영이가 인원제한 약속을 지키느라 계획한 놀이를 하지 못했다면 더 속상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놀이를 하지 못하게 된 아쉬움과 속상함에 대한 위로를 보여주시면서 좀 더 놀이고 싶은 마음에 공감해 주세요.

자유놀이와 자유선택활동은 기본적으로 영유아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일과 중에서 영유아의 참여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시간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유아가 특정한 영역에서 놀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이와 같은 여자 영유아들은 보육실에서 조형이나 역할 영역에 비해 쌓기 영역을 적게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은 이를 여자 영유아들이 다른 영역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자 영유아가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영역을 더 좋아해서 쌓기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여자 영유아들은 교사의 생각과는 다른 이유로 쌓기 놀이를 선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자 영유아들은 쌓기 놀이가 남자 놀이라고 주장하는 또래들 때문에 다른 영역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쌓기 놀이를 선택하면 남자 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와 비행기 같은 쌓기 영역의 놀잇감이 흥미롭지 않아서 다른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합이나 전쟁놀이를 하는 또래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영역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자 영유아들이 쌓기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보육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쌓기 놀이가 남자 놀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유아들과 자주 양성평등적인 성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여자 유아와 남자 유아 모두에게 매력적인 놀잇감을 쌓기 영역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가 쌓기 영역에서 직접 놀이하면서 여자 영유아들에게 쌓기 놀이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놀이와 자유선택활동은 영유아의 선택 권리를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유아의 선택은 자신의 성별, 능력, 연령, 신체적 능력, 언어·민족·문화적 배경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념하면서 보육 교사는 영유아가 혹시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특정한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점심식사

6. 안 먹고 싶어요.

<3세 반 점심시간 유아들이 도시락에 점심을 받아 자리에 앉는다.>

교사 : 오늘의 점심은 밥, 미역국, 시금치, 김치, 소시지예요.

인호 : 전 미역국 조금만 주세요. 시금치는 싫어요. 소시지는 많이 주세요.

교사 : 인호야!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인호 : (도시락을 받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소리 : 선생님, 인호 민호랑 같이 앉아요.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는 자리에 안 앉아요.

인호 : (소리에게) 야! 조용히 해. (교사에게) 나 오늘은 여기 앉고 싶어요.

교사 : 오인호! 자기 자리에 앉기로 약속했잖아요.

인호 : 싫어요. 난 그런 약속 안 했어요.

교사 :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다가 집계를 놓고 인호 쪽으로 와서 인호 도시락을 들고) 인호, 일어나세요. 거기는 안돼요. 밥 안 먹고 민호랑 떠들고 장난치기 때문에 안돼요. 저 쪽으로 가요.

인호 : 치...(교사가 가리키는 자리로 가서 앉는다. 점심을 먹다가) 선생님, 소시지 더 주세요.

교사 : (인호에게) 다른 반찬도 먹으세요.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는 없어요.

인호 : 싫어요. 김치는 매워요. 소시지 더 주세요.

교사 : 시금치랑 김치를 한 번씩 먹으면 소시지 줄게요.

인호 : 다 안 된대...(시금치를 입에 넣고) 웁

인정 : 선생님 인호 토하려고 해요.

교사 : 안돼. 꿀꺽 삼켜!

인호 : (입을 빠르고 움직인다)

② 위 상황에 등장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Q)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호는 어떤 마음일까요?

Q) 교사는 왜 인호가 좋아하지 않는 시금치를 먹도록 권유했을까요?

Q)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인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Q) 교사는 왜 인호가 앉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게 했을까요?

③ 상황에 등장하는 인호와 인호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④ 인호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식이나 점심시간은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은 간식이나 점심시간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먹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거나 낯선 음식을 꺼리는 영유아들은 거의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도 힘들어하는 영유아를 지켜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영유아도 특별하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간식이나 점심시간에는 영유아의 음식에 대한 기호가 존중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책임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육자가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경우에 영유아의 기호를 존중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다른 모든 보육활동처럼 간식 및 식사지도 역시 영유아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식사지도는 영유아가 주어진 음식을 억지로 먹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식이나 식사지도를 할 때 영유아의 기호가 존중 될 수 있도록 먹고 싶은 음식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음식을 접시나 식판에 담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싶으니” 혹은 “얼마나 먹고 싶으니?”라고 물어 주세요.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음식은 전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린이집의 음식은 영유아에게 처음으로 접하는 음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가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 음식을 반복적으로 접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낯선 음식을 꺼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식사지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에게 낯선 음식을 먹어보도록 권할 때 이들이 음식을 살펴보고 스스로 얼마나 먹을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만약 영유아가 스스로 약속한 만큼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낯선 음식을 먹어보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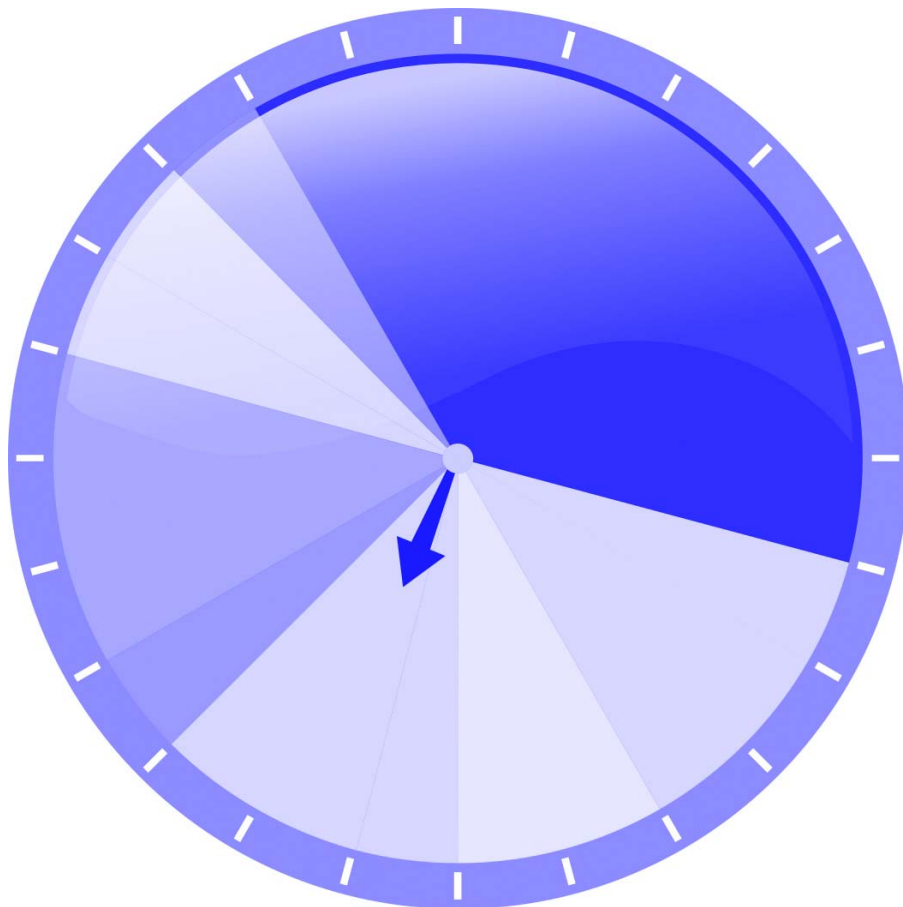
영유아의 식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집중적인 지도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영양교육, 가정과의 협력, 식단과 조리법의 변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들이 싫어하는 음식의 경우에는 이들이 선호하는 조리법을 사용하여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직접 장보기를 하거나 요리를 하는 것도 선호를 높일 방법입니다.

인호처럼 영유아들은 자신의 단짝 친구 옆에 앉아서 점심을 먹기를 원합니다. 친구와 나란히 앉는 것은 점심시간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점심시간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학기 초에 영유아가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지 미리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영유아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기보다 학급운영의 편리성을 먼저 고려한 것입니다. 영유아들이 점심시간에 어디 앉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친한 아이들끼리 앉아 장난을 치느라 점심을 먹지 않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영유아들과 함께 약속을 정하세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영유아들과 교사가 반복해서 의논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활동

인권으로 다시 보는 나의 하루

여러분과 영유아들이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8시간의 일과를 살펴보았던 사전 활동의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영유아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과로 하루 일과표를 채워주세요.





Chapter 5

인권옹호자로 나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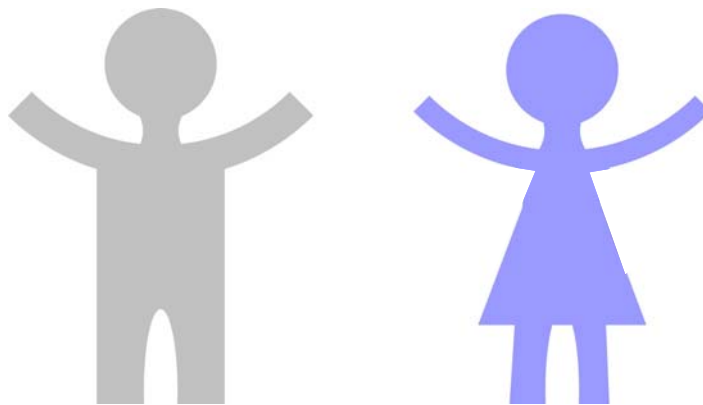


1. 인권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기
2. 인권친화적 교수자가 되기
3. 상호존중과 돌봄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력하기
4. 가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사전
활동

인권친화적 보육교사

인권친화적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적어보세요.



영유아 인권옹호자는 영유아의 인권을 두둔하고 편들어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 의무이행자이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무관하게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인권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최대한의 수준으로 존중되고 실현되려면 보육교직원은 더욱 적극적인 인권옹호자로 나아가야 한다.

영유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아동 중심의 양육방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도 영유아의 인권을 옹호하는 한 방법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비영리기구를 후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내용에 근거하여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인권옹호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육교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은 인권의 가치는 물론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영역의 권리가 존중되는 환경이다. 어린이집이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이 되려면 보육현장의 구조·비구조적 측면의 여러 변화가 필요하지만, 보육교직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먼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실현이 자신의 직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자신이 기존에 수행한 역할을 재해석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은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보육실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찾고 이를 일과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함께 근무하는 동료 및 가정과의 협력을 이루어 영유아를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천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인권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기

인권친화적 보육을 위해 보육교직원은 가장 먼저 자신이 영유아를 바라보는 관점과 보육을 수행하며 자신이 영유아에게 보여준 태도를 성찰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는 존엄한 인격체이며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유아가 미성숙하고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관점은 영유아의 결정과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일방적인 보호와 지도가 일어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지 늘 살펴야 한다.

동시에 보육교직원은 자신이 영유아에게 보여주는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영유아의 권리 실현은 그 전 과정이 영유아에게 우호적이어야 하고 아동 중심적이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하면서 결정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영유아의 권리 실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이 인권친화적 태도를 보여야만 영유아의 권리 실현이 최대한의 수준으로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인권친화적 보육을 위해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존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동료도 포함된다. 그런데도 영유아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영유아와 성인 사이에 존재하는 힘과 권위의 불균형 때문이다.

영유아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점검하는 한 방법은 일상에서 영유아에게 사용하는 언어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아래 제시된 내용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사용했던 언어를 살펴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개선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A보육교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집되었다.

교사가 모든 언어 표현의 상황을 캐치하기가 어려워서 녹화는 하지 않고 녹음만 했었어요. 모든 상황을 녹음했었어요. 그냥 녹음기를 틀어두고 하루를 다 지내는 거예요. 이건 교사반성이고 애들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었고 그 장면 중에 아이들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되잖아요.

A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가 보육 일과 중에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일과를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일과를 운영하면서 기록을 남기기 어렵고 기억에

만 의존하면 불완전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과를 녹음하기로 하였다.

아이들 이름이 있는 명단이랑 사진이랑 있는 노트를 교사들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감정, 기분만 체크했었어요. 처음에.. 그다음에는 애들 말하는 단어 ‘누가 빌려줄래?’ 아니면 ‘안 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적었어요. 그다음에 교사 피드백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애들 기분이라든가 어느 정도 발달수준이 있는지 체크를 했었어요.

녹음된 자료를 활용하여 A교사와 동료 교사들은 영유아의 경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이들은 영유아의 기분이나 정서를 기록하고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이 작업에 대해 A교사는 영유아의 경험에 대한 교사의 성찰적 평가이고 영유아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하였다

녹음과 분석이 거듭되면서 A교사와 동료 교사들은 교사들의 언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교사는 이 변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교사들이 녹음이 거듭됨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처음과 달리 권유형의 언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교사들이 녹음했던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반성이 있었는지 어떤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말에는 애들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훨씬 더 존중하는 언어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권유형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흥미롭게도 A교사와 동료 교사들은 성인의 언어가 변화함에 따라 영유아들의 행동이 변화했다고 인식하였다. A교사는 교사들이 영유아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영유아들이 교사들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했으며 긍정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권유형보다는 지시형이 많았어요. 지시라는 것은 반강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율권이 일단 침해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무조건 허용적인 것을 인권이라고 전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지시를 하고 강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아이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구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언어부터 존중해주면 아이가 교사한테 다가오는 그다음 행동이라든가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것을 저희가 느꼈어요. 그냥 말인데도 말에 들어가 있는 감정이나 표정이 달라져서인지 어떤지는 녹음이지만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사들의) 말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A교사와 동료 교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했다. A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지시형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보육환경에서 영유아의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이 실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시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시키는 것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람과 지시받는 사람의 관계가 불균형적이다. 보육교직원이 “~하세요” 형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에게 무엇을 하게 시킨다는 점에서 지시는 반강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 권유형 언어는 영유아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나누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다. 예컨대 “김치도 먹으세요”라는 지시와 달리 “김치도 한 번 먹어보자” 혹은 “김치도 한 번 먹어볼까?”와 같은 권유는 영유아에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시와 비교했을 때 권유는 권유한 사람과 권유받는 사람이 비교적 평등하다. 권유형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보육환경에서는 영유아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율적인”(이재연 외, 2015, p.85) 존재로 존중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에 부합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대하는 자신들의 태도를 권유형/지시형 언어의 측면과 아울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참여 및 의견 존중의 원칙을 따르는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태도를 살펴야 한다(이재연 외, 2015, p. 89-94).

- 영유아의 언어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 영유아의 의견이나 정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가?
-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영유아에게 주도권을 주는가?
- 영유아가 생각하고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는가?
- 영유아의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적인 표현을 신중하게 하는가?
-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주로 긍정어를 사용하는가?
- 영유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칭찬하는가?
- 영유아가 비협조적일 때도 이들을 존중하는가?

2. 인권친화적 교수자 되기

영유아 인권의 옹호자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자신의 기관이나 보육실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보육프로그램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육교직원은 인권친화적 교수자가 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인권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인권교육이 인권을 옹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여 더욱 능동적인 권리주체가 된다. 한편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교수자로서 보육교직원은 자신들이 수립한 보육과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은 보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인 보육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과 평가의 전 과정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되며 영유아를 존중하고 이들의 권리 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살펴야 한다.

유아들이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질서와 규칙이 확립되어 있는 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유아, 유아-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 또 환경구성도 다양하게 흥미롭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제공자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자유와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와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J교사)

인권교육은 인권을 존중, 보호, 성취,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자 전제조건이다 (Levin, 2012).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준과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는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존재이며 동시에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2006)은 출생부터 영유아기까지가 권리 실현의 결정적인 시기이며 권리주체인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아는 것은 이들이 당면하게 누려야 할 권리임을 밝혔다. 따라서 영유아를 위한 인권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다. 아동권리위원회(2006)는 영유아를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일반논평 7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권교육의 내용은 영유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제들과 밀접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영유아의 이해, 관심 및 능력 발달에 적합하며 영유아에게 권리와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인권친화적 교수자로서 영유아의 학습을 돕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한 보육 프로그램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은 보육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과 평가 등의 전 요소가 영유아를 존중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는지 살펴야 한다. 영유아보육은 아동 중심 철학과 영유아의 발달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영유아의 욕구, 흥미, 개인차, 발달 특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추구해왔다. 이 점에서 영유아보육은 영유아에게 우호적이며 영유아의 존엄성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기관이나 보육실의 보육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은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육목표와 내용이 영유아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방법은 개별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특유의 성격과 관심, 능력과 학습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 영유아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보육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적합한 교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평가해야 한다.

첫째, 보육교직원은 보육프로그램이 영유아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운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육교직원은 놀이를 통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생활주제와 영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놀이가 제공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은 편성·운영된 보육과정에 영유아의 흥미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시간을 제공받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은 구체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의 생활 속 경험을 중심으로 보육프로그램이 편성·운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주요 생활환경인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이들이 하는 경험을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

로 보육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또래, 성인, 물리적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편성·운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영유아는 다양한 상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연령, 사전 경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가 또래, 교사 그리고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상호존중과 돌봄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력하기

제가 감정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메이트나 원장 선생님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들과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제 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깐 그런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요. 메이트와 서로 보완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메이트한테 이야기를 하면 메이트가 좀 더 힘을 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요. 그렇게 되면 메이트가 분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저도 놀이 상황에서 몰입을 하다 보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 감정도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H 교사)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성인 구성원들과 상호존중과 돌봄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만들어 인권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직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어린이집의 구조·비구조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현하려면 어린이집의 구조·비구조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구조·비구조적 환경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구조적 환경의 변화는 보육 관련 법률과 정책 등을 조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개별 어린이집의 비구조적 환경은 보육교직원 사이의 상호존중과 돌봄에 기반을 둔 협력을 통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개선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개별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돌봄으로써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B원장을 면담하면서 수집된 것이다. B원장은 “오늘은 맑음”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오늘은 맑음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오늘은 맑음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스티커 두 장이 있어요. 교사들한

테. 하나는 “나 건들지 마”, “오늘은 좋아”, 이거였어요. “나 건들지 마” 스티커는 조그마하게 앞치마나 옷에 붙여 두는 거죠. 의미는 교사가 생리라든지 남자 친구와 이별이라든지 혹은 뭐 부득이한 경우, 기분이 좋지 않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스티커를 우리만 알게 붙여놔요. 학부모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지만 때로는 어린이집 안팎에서의 경험이나 신체적인 변화 등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영유아와 달리 보육교직원은 신체·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어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육교직원은 겉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통제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3년 보육교사의 근로실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대부분 보육교직원은 자신을 위로하거나 추스르기 위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보육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건상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B원장의 사례에 등장하는 보육교직원들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오늘도 맑음” 프로젝트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배려가 필요한 동료를 돌보기 위해 담당한 업무보다 많은 일을 하거나 정해진 업무 기한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였다.

“나 건들지 마”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 교사한테는 그 날 주어진 할당량을 동료 교사들이 대신해 줘요. 청소 분담 구역이 있거든요. 그거 대신해줘요. 대신해주고 보육일지 하루 미뤄도 제(원장)가 용서해줘요(웃음). 그렇게 하루를 위로할 수 있게 해줘요. “평가일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런 거 한다고 담당하게 얘기할게. 평가일지 관찰자는 약속하지 않고 쉬는데 하루가 없으면 저의 벌점 우수점수에서 1점 미흡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거 괜찮아. 커버해주겠어 그 정도는 해줘야지 했어요. “오늘은 맑음” 스티커(를 붙인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게 있으면 그 선생님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요.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 실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보육교직원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성인 구성원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B 원장의 사례처럼 동료들 배려하고 연대하여 어린이집에서 인권친화적 문화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론 개별 어린이집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맑음” 프로젝트를 모든 어린이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육교직원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험을 해야 한다.

4. 가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인권친화적 보육을 위해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의 파트너십을 이루어 개별 영유아의 가정환경이 영유아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맥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유아는 권리 실현에 있어 성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육자를 영유아 권리 실현의 통로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양육자가 영유아를 독립된 인격체로 이해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 중심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7번에서 양육자가 자신의 의무이행자로서 해야 할 역할과 아동 중심적인 양육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양육자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육교직원에게 가정과의 협조는 새롭게 요구되는 낯선 역할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영유아보육은 양육자를 영유아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는 교사이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유아보육은 양육자가 자신들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주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 사이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와의 협력을 힘든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Gibbs, 2005). 특히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이 서로 다른 아동관과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양육자가 보육교직원의 신념과 가치와는 다른 요구를 할 때 상당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다음 제시된 사례는 C교사와의 면담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육교직원이 양육자의 요구와 인권친화적 보육 사이에서 경험한 갈등을 보여준다. C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신체적 조건과 식습관을 고려하여 식사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C교사는 양육자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식사지도를 할 수 없었다.

어떤 아이는 원래 배가 작아서 잘 못 먹는 아이인데 키가 작으니깐 부모님이 무조건 애는 남기는 거 없이 다 먹여 달라, 이렇게 되었을 때 제일 난감해요. 작년에 작은 애 데, 애는 정말 먹는 게 힘든 애예요. 이 정도 먹어도 충분히 뛰어놀고 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부모님은 억지로 다른 아이들의 두 배를 무조건 먹여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썩서 넣는 거예요. 애는 맨날 먹기 싫다고 울고 저희도 중간 입장에서 엄마한테 계속 전달을 해요

C교사는 자녀가 또래보다 체격이 작은 것을 염려하는 양육자로부터 또래가 먹는 양의 두 배를 먹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일부 양육자는 보육교직원에게 자녀가 일정한 양과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하기도 한다. 이러한 식사지도를 통해 자녀의 식습관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C교사는 유아가 다른 또래에 비해 적게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활동에 지장이 없으므로 억지로 음식을 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자녀가 먹은 음식의 양을 사진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양육자 때문에 C교사는 자신의 신념과는 달리 강압적인 식사지도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식사 때마다 힘들어하는 유아를 지켜보며 양육자에게 이 상황을 전했다, 양육자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C교사는 회상하였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순간부터 하원하는 순간까지 보육교직원은 수많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은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윤리강령과 표준보육과정 등을 참조해야 한다. 즉 이들 지침에 근거하여 영유아와 이들의 권리 실현을 가장 먼저 고려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상황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보육교직원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C교사의 사례처럼 양육자가 자녀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요구나 기대를 하고 있을 때 보육교직원은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물론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의 요구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입장과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이나 보육교직원이 양육자의 요구나 기대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린이집에서 인권친화적 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양육자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만약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양자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가정과 어린이집이 조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신한다면 영유아의 인권실현은 물론 기본적인 성장과 발달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은 양육자가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가정에서 인권친화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은 양육자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양육자를 위한 인권교육은 인권이나 아동권리를 독립된 주제로 진행하거나 기존의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에서 인권친화적 양육법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양육자를 지원하는 인권교육의 진행방식은 개별 기관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양육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사후
활동

내 동료들 소개합니다

인권친화적 보육교직원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주변에도 이미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육을 실천하는 보육교직원이 있을 겁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영유아를 존중하고 이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료 교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 동료의 어떤 점이 인권친화적 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후
활동

인권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

인권 씨앗 하나가 선생님의 마음에 묻혀 튼튼하고 품 넓은 인권옹호자 나무로 자라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Chapter 6

부 록



1. 세계인권선언
2. 아동권리협약
3.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2009년 권고사항의 세부내용
4. 영유아보육의 인물로 살펴본 아동권리 존중의 전통

1. 세계인권선언(인권운동사랑방)

제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해

택을 나눠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2. 아동권리협약²³⁾

제1조 아동의 정의

국내법에 의해 성년의 나이를 더 낮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2조 차별금지

이 규약의 모든 권리는 예외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제3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국가는 부모 또는 기타 양육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이행

국가는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제5조 부모의 지도와 아동의 진화하는 역량

국가는 부모와 확대가족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적합한 지도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생존과 발달

모든 아동은 고유한 생명권이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23) 본 교재에 수록한 아동권리협약은 국가인권위원회(2006)의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수정된 것이다.

제7조 성명과 국적

아동은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아동은 국적을 취득하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8조 신분의 유지

국가는 아동의 신분을 보호하고, 필요할 경우 기본적 신분 요소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성명, 국적, 가족관계가 포함된다.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은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부모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0조 가족의 재결합

아동과 그 부모는 재결합 또는 자녀 부모의 관계유지를 목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입·출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1조 불법이송 및 미귀환

국가는 부모 중 1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아동이 해외로 납치되거나 해외에 억류되는 것을 막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아동의 의견

아동은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항이나 절차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3조 표현의 자유

아동은, 국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이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국가는 부모의 적절한 지도하에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 결사의 자유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법의 준수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받지 않는다.

제16조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 가족, 가정 및 통신의 간섭, 그리고 명예훼손과 비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17조 적합한 정보에의 접근

국가는 아동에게 다양한 정보원의 정보와 자료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유익한 사회·문화적 정보를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일차적 책임을 지니며, 국가는 부모의 이러한 책임을 지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아동학대와 유기로부터의 보호

국가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보호의 책임을 진 자의 학대행위가 있을 시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사회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정이 없는 아동의 보호

국가는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그러한 경우에 적절한 대체 가족 양육 및 기관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아동의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양

입양이 인정되거나 허용되는 국가에서,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 위에 관할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22조 난민 아동

난민 아동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한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은 존엄성 속에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향유하며, 최대한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보호,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4조 보건 및 보건 서비스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일차적·예방적 보건 서비스 제공, 국민보건교육, 유아사망률 감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고 필요한 보건 서비스의 이용권을 박탈당하는 아동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제25조 양육 지정의 정기적 검토

국가에 의해 양육 지정, 보살핌,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배치된 아동은 그러한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6조 사회보장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27조 생활수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책임이 이행되고 완성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책임은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 교육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초등교육이 의무적으로 무상 제공되고, 모든 아동이 다양한 유형의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모두가 역량에 따라 고등교육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 학교 규율은 아동의 권리 및 존엄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는 이 권리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 교육의 목적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활동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며,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관과 타인의 문화적 배경 및 가치관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 또는 원주민 집단의 아동

소수 공동체와 원주민 사회의 아동은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 및 언어를 실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1조 여가, 오락 활동 및 문화적 활동

아동은 여가를 즐기고, 놀이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2조 아동노동

아동은 자신의 건강, 교육 또는 발달을 위협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최저 고용 연령을 정하고 근로조건을 규제하여야 한다.

제33조 약물남용

아동은 중독성·향정신성 약물의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약물의 생산 또는 거래에 연루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4조 성적 착취

국가는 매춘, 포르노 등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5조 인신매매, 거래 및 유괴

국가는 아동의 인신매매, 거래 및 유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36조 기타 유형의 착취

아동은 본 협약의 제32조, 33조, 34조, 35조에서 다루고 있는 착취 외에도, 자신의 복지를 침해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7조 고문과 자유 박탈

어떠한 아동도 고문, 가혹한 취급이나 처벌, 불법체포 또는 자유 박탈을 당하지 않는다. 사형과,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감금되어 있는 아동은 가족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무력분쟁

국가는 15세 미만의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지 않도록 모든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군에 입대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관련 국제법에 기술된 바와 같이,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이 보호되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재활보호

국가는 무력분쟁, 고문, 아동 유기, 학대 또는 착취의 피해아동이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40조 아동법 행정

법을 위반한 아동은,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고, 아동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은 자신의 변호를 위한 법적·기타 지원뿐만 아니라 법 절차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사법 처리 및 시설 배치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제41조 높은 기준의 존중

아동권과 관련되어 실행되고 있는 국내·국제법상의 기준이 본 규약의 기준보다 높을 경우, 보다 높은 기준이 항상 적용된다.

3.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2009년 권고 사항의 세부내용

15. 위원회는 34.9%의 노동력이 비정규직이고 여성근로자의 44.1%가 비정규직, 그리고 특별경제구역 내 근로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을 우려한다.

- (a) 비정규직 근로자 월수입이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점
- (b)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이 부적절한 점
- (c)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2년의 근로계약이 종결되기 전에 즉각 해고될 위험에 처해 있음으로 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기가 불가능한 점
- (d) 비정규직을 부당해고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점(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 비정규직과 파견직 근로자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결론지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아래 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 (a) 동일 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
- (b) 적절한 사회보험 적용
- (c) 실직수당, 휴가 및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노동법 보호
- (d)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16. 위원회는 점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사회권 규약 제7조).

위원회는 당사국에 최저임금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규약 제7조 제(a)항 제(ii)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에 최저임금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까지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할 것과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금 등 여타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적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더한층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계산법 변경이 이주노동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20. 위원회는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죄’에 기대어 근로자에 대한 빈번한 기소 사례 및 파업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물리력(force) 사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동조합의 권리(trade union rights)를 적절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제8조).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와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absolutely) 필요한 수준을 넘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체계적인 수단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조항의 적용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결성의 자유보장협약’(1948)과 제98호 ‘집회와 단체협상의 권리협약’(1949)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22. 당사국은 아시아에서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세계 제12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이에 걸맞은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 실현,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의 권리 실현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8.2%가, 특히 일부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이, 확립된 국민적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가운데, 가장 취약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민최저복지기준’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부적절한 공적 사회비용 및 의료, 교육, 식수 및 전기 공급 등 사회 서비스의 높은 민영화 수준으로 인해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이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지원 의무(duty to support)’ 기준 또는 부(富) 기준과 동 제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검토되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를 주목하며, 당사국이 동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과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등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동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3. 위원회는 다수의 노인이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한다. 당사국이 세계에서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60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두 배가 되는 데 22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대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인들이 궁색하지 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최소연금 또는 여타 사회부조 혜택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충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6. 위원회는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계속 확대, 심화됨을 우려한다(규약 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빈곤철폐 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최소생계비용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빈곤선의 존재를 주목하면서도,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빈곤철폐 전략이 주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빈곤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E/C.12/2001/10)에 관한 위원회의 성명에서 권고했듯이, 당사국이 빈곤철폐 전략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성별, 연령, 가구당 아동 수, 비혼모 가구 수, 농촌/도시 인구 및 소수민족 그룹 등으로 분류된 매년 빈곤생활 인구의 비율에 관한 최신 통계자료를 포함, 빈곤철폐 전략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결과에 관한 상세 정보를 차기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7.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인 문제를 다루고, 동 문제의 범위 및 원인을 조사하며, 노숙인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노숙인 문제의 범위 및 원인들을 조사하고 노숙인에게 적절한 수준

의 생활을 보장하며, 노숙인 문제를 다룰 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성별, 연령, 농촌/도시 인구로 분류된 당사국 내 노숙인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28. 위원회는 206만 가구(조사 대상 가구 중 13%)가 최소 주거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2005년 인구 및 주택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규약 제11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주거 문제에 관한 진정이나 지원 요청을 다룰 정부 내 전담 창구(focal point)를 설립하도록 거듭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주거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1991)와 부합되게, 특히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임대 안전성과 알맞은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을 권고한다.

29. 위원회는 강제 퇴거에 의해 영향을 받은 혹은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상담 및 법적 구제 조치가 부족한 점, 강제 퇴거를 당한 개인 및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 또는 적절한 이주 장소 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결과로서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강제 퇴거의 범위에 관한 정보가 당사국의 보고서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규약 제11조).

위원회는 강제 퇴거가 최종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산사건에서와 같이 폭력으로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개발 또는 도시정비사업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통보 및 임시 주거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최우선적으로 강제 퇴거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7호에 따라 다음을 촉구한다.

- (a) 주거로부터 강제 퇴거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 그리고/또는 이주 장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 (b)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이행하기에 앞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와

공개 토론 및 의미 있는 협의 추진

- (c) 새로운 거주지는 식수, 전기, 세정 및 위생 시설 등 기본적 서비스와 공공시설이 제공되고 학교, 의료센터 및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할 것을 보장
- (d) 차기 정기 보고서에 매년 성별, 연령 및 가구(household)로 분류된 데이터를 포함한 강제 퇴거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

30. 위원회는 국민의료보험에도 불구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들이 전체 별원의 90%를 차지하는 민영 병원의 의료 서비스에 충분한 접근권이 없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비용의 약 65%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적 부담이 상당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규약 제1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의료 지출을 증가하고,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달성이 가능한 최고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2000)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37. 위원회는 당사국이 동 최종 견해를 전 사회 계층, 특히 국가공무원, 사법부 및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 널리 배포할 것, 동 최종 견해를 번역해 가급적 널리 공표할 것, 최종 견해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를 차기 정기 보고서에서 포함, 위원회에 알리도록 요청한다. 또한 차기 정기 보고서 제출 이전 국가 수준의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NGO 및 여타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4. 영유아보육의 인물로 살펴본 아동권리 존중의 전통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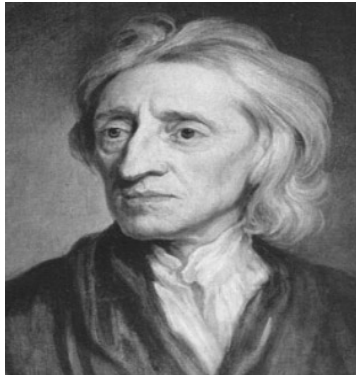
근대 교육의 선구자 코메니우스(Johann A. Comenius, 1592~1670)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는 체코의 교육자이자 종교개혁자로 근대 교육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은 중세기적인 성인의 축소판으로서의 아동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탄생시켰다. 코메니우스는 감각적 실학주의자의 대표자로, 감각을 통해 지식을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그림을 이용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세계도회』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또한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학 저서로 알려져 있는 『대교수학』을 저술하였는데 이 책에서 코메니우스는 모든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교육제도와 교수-학습방법을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머니와 보모를 위한 교육 지침서인 『유아학교』에서 6세까지의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교육방법은 자연 질서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아기에는 실물을 통한 감각 교육이 중요하며 감각에 의하지 않고 지성에 이르는 것은 없다는 입장에서 감각적 직관을 강조하였다. 그의 사상은 18세기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교육의 원리를 자연 속에서 발견)의 시조가 되었다. 그리고 19세기의 페스탈로찌, 프뢰벨, 엘렌 케이, 진보주의 사상의 모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사상에 큰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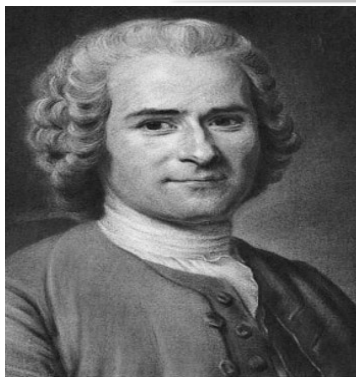
24) 이 내용은 김동일, 조옥희 (2011), 송준식, 사재명 (2007), 이기숙 외 (2004), 한미라 외 (2008), 황해익 외 (2012)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경험론 철학자 로크(John Locke, 1632~1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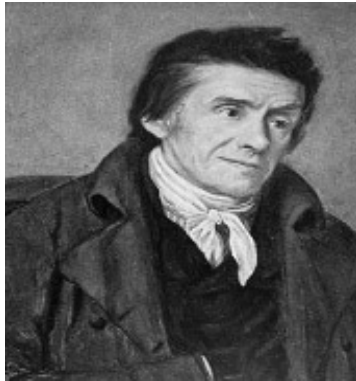
로크는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 사상가이다. 로크는 영국의 첫 경험론 철학자로 평가를 받지만, 사회계약론도 동등하게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다. 로크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사상은 “백지설(tabla rasa)”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은 마치 백지와 같고 깨끗하게 닦여진 칠판과 같아서 이 백지 위에 새겨져 가는 아동의 경험 하나 하나는 그의 인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로크는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론을 전개하였다. 특히 『교육에 관한 고찰』에서는 아동의 자유를 존중하고 체벌이나 질책보다는 칭찬을 권하며 스콜라적인 엄한 문법 훈련을 부정하며 아동의 인식 발달의 순서성과 아동의 생활 현실에 따르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을 주장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로크는 자신의 교육사상을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표현하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의 목적으로 밝혔다. 로크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는 그가 인간을 생생한 현실 속에서 파악하였고 풍부한 경험의 실재를 통해 교육 현상을 설명한 점에 있다.

어린이의 발견자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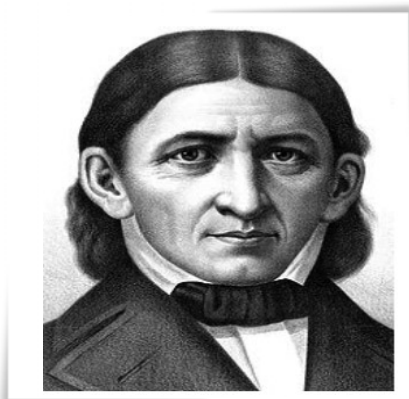
루소는 프랑스의 천재적 사상가이자 교육사상가이다. 그는 절대군주 하에서의 엄격한 사회 계급제도에 저항하여 인간 평등과 자연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교육이론을 제시하였다. 루소의 교육사상은 축소된 어른으로서의 아동관에 반대하고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의 아동관을 주장하여 현대 교육의 기초를 이룬 아동 존중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루소는 ‘어린이의 발견자’이고 아동 존중 사상의 주창자로 불린다. 그는 가상의 한 소년을 출생에서부터 사춘기까지의 교육을 논한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이 갖고 태어난 선을 보존하면서 그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그려냈다. 또한 그는 자연의 성장 과정을 수용하여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불필요한 성인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교육론’을 주장하였다. 즉 루소에 따르면 교육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루소의 교육 사상은 자연에 순응하는 교육, 경험과 감각을 통한 학습, 개성 존중, 생활중심 교육으로 교육을 개혁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고 그의 이러한 자연주의 교육방법은 페스탈로찌와 프뢰벨의 교육 실천으로 발전되었다.

사랑의 교육가 페스탈로치(Johann Heinrich Pestalozzi, 1764~1827)



페스탈로치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사회를 개조하는 길은 참다운 도덕인의 양성에 있다고 믿은 교육 사상가이자 그 믿음을 실천한 위대한 교사이다. 그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관에 영향을 받아 자연에 따르는 교육 즉 ‘합자연의 원리’로 유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자연의 원리에 따른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자발성의 원리, 직관의 원리, 노작의 원리 등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페스탈로치는 인간의 본성을 계발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 보았으며, 교육의 목적을 인간의 모든 능력(지적, 신체적, 도덕적인 면)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인간의 정신적 내면력을 정신(지: Head), 심정(덕: Heart), 기술(체: Hand)로 구분하여 이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교육의 원리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아들을 위한 교육, 빈민을 위한 교육에 일생을 바쳤으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가정적인 관계가 자연의 최초이며 동시에 가장 우수한 관계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근대 교육학의 중심 원리가 되었으며 활동 중심 유아교육, 아동 중심 유아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유치원 교육학의 아버지 프리벨(Friedrich Wilhelm August Fröbel, 1782~1852)



프로벨은 페스탈로치를 계승하여 포괄적이고 독창적인 교육철학과 유아교육 이론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의 어린이 이해와 유아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 교육사상가이고 교육실천가이다. 유치원 및 유치원 교육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리벨은 독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일곱 달 만에 어머니를 여읜 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성장했다. 프리벨의 교육 사상은 『인간 교육』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는 “우리들을 어린이와 더불어 살게 하라, 그러면 그들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을 평화와 환희로 환하게 하고 우리들은 비로소 충명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그는 교육목적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신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만물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신은 만물에 상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원만하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프리벨은 놀이의 역할을 강조하며 조화와 통일이라는 교육원리를 강조하였다. 실제로 그는 체계적인 유아교육과정과 훈련받은 교사에 의해 교육되는 최초의 유아교육기관인 ‘어린이 정원(kindergarten)’을 세워 ‘은물’과 작업 중심의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유아를 위해 고안하고 제작한 교구인 ‘은물’은 유아의 창의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으로 단일함 속에 자연의 법칙을 담은 것이다. 1부터 10까지로 구성된 은물은 정확한 순서와 방법이 제시되어 진행되며 은물을 통하여 감각기관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논리-수학적 지식도 획득된다고 보았다.

과학적 교육학의 시초 몬테소리(Maria Montessori, 1870~1952)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최초의 여성 의학자로서 지적장애아들의 치료를 위한 교육을 시작으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돌려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몬테소리는 빈민계층을 대상으로 ‘어린이 집(Casa de Bambini)’을 설립하여 몬테소리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한 실제적인 교육을 시작하였다. 몬테소리는 저서 『어린이의 발견』에서 아동을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내적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보고 교육에서 ‘자유와 자기 활동의 원리’를 끌어냈다. 또한 그녀는 유아가 “민감기”(유아기에 나타나는 어떠한 능력을 획득하는 특별히 민감한 상태)와 “흡수 정신”(내부로부터 잠재된 흡수하는 정신능력을 통하여 환경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경험하여 배우는 것)이라는 특성에 따라 발달한다고 보았다. 몬테소리 학교인 ‘어린이 집’에서는 교사에 의해 준비된 환경에서 보육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였다. 특히 몬테소리는 ‘어린이집’을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탁아의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몬테소리의 교육이론은 생물학과 의학을 바탕으로 한 실증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측면과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에 이르는 자연주의적 사상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몬테소리의 교육방법은 성인의 억압과 권위를 최소화하고 아동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과 아동의 자발성과 자유를 인정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험주의 교육사상가 듀이(John Dewey, 1859~1952)



듀이는 미국의 교육 사상가로서 유아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듀이는 시카고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대학 내에 실험학교를 설립하여 자신의 교육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이후 듀이는 자신의 교육 사상을 『민주주의와 교육』, 『학교와 사회』, 『경험과 가치』 등의 저서 등에서 피력하였다. 흔히 듀이의 교육관은 실용주의 교육, 진보주의 교육, 아동 중심 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듀이의 교육은 자발성, 계속성, 상호작용의 원리, 흥미에 기초한 활동 그리고 아동 중심 사상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듀이는 교과 혹은 지식을 영유아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전통교육을 비판하면서 경험의 성장 관점에서 교육을 설명하였다. 듀이에 따르면 교육은 경험 안에서, 경험에 의하여, 경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발전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영유아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얻게 되는 지식의 재구성 과정이며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유아의 자발적인 활동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듀이는 놀이를 단순한 유희로 여기지 않고 지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보았다. 듀이에 따르면 영유아는 놀이하는 동안 놀잇감이나 구체물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탐구학습을 하게 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해 추상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인지발달이론가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



스위스의 발달심리학자 피아제는 알프레드 비네(지능검사의 창시자)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능검사 결과를 기록하며 아이들이 특정한 질문에 반복적으로 틀린 답을 하는 것을 관찰하며 인지발달이론을 창안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관찰과 연구결과를 이루어냈다. 피아제는 유기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구조를 바꾸어 가듯이 유아는 환경의 탐색자로 스스로의 경험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간다고 생각하였다. 피아제 인지발달의 기초가 되는 개념은 도식(schemes)으로, 이는 지식의 기본 단위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 구조로 정의된다. 도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발달의 기제는 동화(인간이 외부의 환경에서 새로운 사물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에 맞추어 받아들이는 것)와 조절(외부의 환경이나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도식에 맞지 않을 때 그 도식을 바꾸거나 수정하는 과정), 그리고 평형화(동화와 조절의 인지과정을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로 나눠 설명하였다.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은 오늘날까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영유아기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피아제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발되기도 하였다.

사회문화 이론가 비고츠키(Lev Semenovich Vygotsky, 1896~1934)



러시아의 심리학자인 비고츠키는 개인의 발달이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발달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두 가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성장인 자연적 발달과 사회문화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발달이 그것이다. 그는 사회문화적 발달은 유아보다 유능한 구성원과의 협동적인 대화가 유아로 하여금 발달로 이끈다고 보았다. 비고츠키 이론의 주요 개념에는 근접 발달 지대(ZPD: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와 비계 설정(Scaffolding) 그리고 언어의 역할이 포함된다. 근접 발달 지대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비계는 교사나 ‘유능한’ 또래로부터 받는 상당한 양의 지지를 뜻하는 것으로 비고츠키는 비계는 점차 감소하여 혼자서도 과제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넘어 정신을 발달시키는 사고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언어를 통해 개인은 같은 문화에 속한 구성원과 생각하는 방식 등은 공유하고 문제 해결 양식을 전수받거나 전수하게 된다. 피아제가 유아와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이라면 비고츠키 이론은 이를 한층 더 발달시켜 환경이 유아에게 줄 수 있는 역동적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아동 중심 사상의 실천가 소파 방정환(1899~1931)



소파 방정환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아동 중심 사상을 주창한 사상가이자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소파 방정환의 아동 중심 사상은 우리나라의 자생적인 사상인 천도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어린이라는 단어는 소파 방정환이 이전까지 녀석, 놈, 애 등으로 불리던 아동에게 부여한 호칭이다. 서구의 아동 중심 사상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방정환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다방면의 실천 활동을 펼쳤다. 방정환은 출판물을 통한 실천 외에도 아동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 활동과 예술 전시회 등을 통해 자신의 아동교육에 대한 신념을 실천하였다. 방정환은 1923년 천도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잡지 『어린이』의 창간호를 발간하고 어린이 예찬을 게재하였다. 『어린이』에는 아동이 즐길 수 있도록 쉽게 쓰인 동화나 동요가 주로 실렸다. 이후 방정환은 여러 동료와 함께 1923년 동경에서 색동회를 창립하고 1923년 5월 1일을 제1회 어린이날로 선포하고 색동회를 출범시켰다. 방정환은 아동을 선한 본성을 가진 존재, 나름의 개성, 인격, 존엄성을 지닌 존재,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척하는 독특한 존재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교육의 목적은 어른이나 부모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 아동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참고문헌

- 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 (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8 (1), 1-12.
- 구정화, 송현정, 설규주(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 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5. 아동권리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아동센터(2014). 알쏭달쏭 권리 알권리: 팡팡이와 함께 하는 유아인권이야기(이론편). 서울: 유아림.
- 권미경 외 (2013). 3-4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현황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동일, 조옥희 (2011). 유아교육사상사 (제2판). 경기: 양서원.
- 김인숙, 현온강, 황소영, 정병수 (201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태천 (1996).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1, 175-215.
- 나종일 (2012). 자유와 평등의 인권선언 문서집. 파주: 한울.
- 문미옥 (2012). 교육과 보육을 위한 영유아 교육과정. 서울: 창지사.
- 박병도 (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입법정책, 1(1), 35-65.
- 박진완 (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16(1), 181-208.
- 박한비 (2014).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아 (20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12(2), 103-120.
- 변용찬 (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한국아동권리학회, 3(2), 43-68.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송준식, 사재명 (2007). 유아교육의 역사와 사상. 서울: 학지사.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3), 215-232.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 민감성 향상교육.
- 세이브더칠드런 (2009).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신은수 외 (2013). 유아교사론. 서울: 학지사.
- 오병선, 박종보, 김비환, 홍설희, 박경서 (2011). 인권의 해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우병창 (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 법학, 34, 477-522.
- 유니세프 (2012). 나답게 너답게: 어린이 권리교육 교사용 지도서. 서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일반논평 7 초기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일반논평 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GENERAL COMMENT NO. 8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2006).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유엔 초·중·등학교 인권학습활동 안내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화 외 (2011). 유아교육개론. 경기: 양서원.
- 이기숙 외 (2004). 유아교육개론. 경기: 양서원.
- 이노홍 (2013). UN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 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이배근 (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 357-379.
- 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 0-8: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경기: 교육과학사.
- 이준일 외 (2014). 행정과 인권(개정판).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준일, 김지혜, 이승택, 박진아 (2015). 인권행정 길라잡이: 국가기관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혜원(200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4(3), 262-287.
- 하승수 (2012).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서울: 두리미디어.
- 한국보육지원학회 (2015). 2015 보육백서. 서울: 정민사.
- 한국보육진흥원 (2011). 보육교사 승급교육 교재. 서울:(재)한국보육진흥원.
- 한미라 외 (2008). 유아교육개론. 경기: 양서원.
- 한지숙, 홍은주 (1998).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실현. 아동과 권리, 2(2), 39-51.
- 허종렬 (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 8, 71-113.
- 황옥경 (2012).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1), 27-49.
- 황해익 외 (2012). 유아교육개론 (제2판). 경기: 공동체.
- Bae, B. (2009).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e: Challenges in everyday interactions.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Journal*, 17(3), 391-406.
- Benedek, W. (2006)(Ed.). *Undertrading human rights: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ein: NWV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 Dalberg, G., Moss, P., & Pence, A. (2007). 포스트모던 유아교육: 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열어가기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stmodern Perspectives](김희연 외 역). 서울: 창지사. (원전은 1997에 출판)
- Driscoll, A., & Nagel, N. G. (2008). *Early childhood education, birth-8: The world of*

- children, families, and educators*. Boston: Pearson.
- Flowers, N., Bernbaum, M., Rudelius-Palner, K., & Tolman, J. (2000).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MN: University of Minnesota.
- Gibbs, N. (2005, February 21). Parents behaving badly: Inside the new classroom power struggles: What teachers say about pushy mom and dads who drive them crazy. *Time*, 40-48.
- Levin, L. (2012). 인권[Human Rights]. (이명재, 서현수 역). 서울: 북스코프. (원전은 2012에 출판).
- Mac Naughton, G., Hughes, P., & Smith, K. (2007).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and children's rights: tensions and possibilities arou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Comments No. 7. on children's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15(2), 161-170.
- Thorpe, K., Boyd, W., Ailwood, J., & Brownlee, J. (2011). Who wants to work in child car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nsideration of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6(1), 85-94.
- Winter, K. (2011). The UNCRE and social worker' relationships with young children. *Child Abuse Review*, 20, 395-406.
- Zaman, A., Amin, R., Momjian, I. E., & Lei, T. (2012). Complexities in managing the child care industry: an observation on challenges and potentials. *Education*, 132(4), 739-753.